

公職選舉및 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代案)

의 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02. 2. .

제안자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2.1.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를 구성함.

나. 제22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2.2.25)에서 2000
년 6월 2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개정법률안, 2000년 11월 28일 임인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7월 23일 안상수의원이 대표발
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7월 24일 추미
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8
월 30일 전갑길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
법률안, 2001년 9월 5일 권태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및선거부
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9월 5일 강재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공
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12월 5일 박상천의원

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12월 7일 고흥길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12월 7일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2000년 11월 25일 배기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거주외국인에대한지방선거권등의부여에관한특례법안을 심사한 결과 11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27회국회(임사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02.2.25)는 법안 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광역의회의원선거에 1인 2표제를 도입하고,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골자

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자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기간행물 1부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의3제4항).

나.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

다. 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부터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1항).

라. 지역구 시·도위원의 정수는 현행대로 구·시·군 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2인으로 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개 또는 3개의 국회의원지역구로 있다가 1개 또는 2개로 통합된 경우에는 2002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한해 각 1인을 더한 수로 함(안 부칙 제3항)

마.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현행과 같이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1천미만의 면과 6천미만의 동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하고, 인구 3만이상의 읍과 5만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바. 지방의회의원 선거기간을 현행 14일에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기간과 같이 17일로 함(안 제33조제1항).

사. 시·도의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후보 추천시 정당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후보자 등록접수 거부사유와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함(안 제47조제3항·제49조제8항 및 제52조제1항).

- 아.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과 같이 선거일전 16일부터 2일간으로 함(안 제49조제1항).
- 자. 후보자등록시 소득세, 재산세 외에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증명서를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49조제4항제4호).
- 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그 소속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당원의 금고 이상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0항).
- 카. 선거기간에 한하여 후보자의 전과기록, 납세실적 및 병역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2항 신설).
- 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 입후보시 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하도록 함(안 제53조제1항).
- 파. 시·도의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기탁금을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56조제1항).
- 하.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기탁금반환요건을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로 함(안 제57조제1항).

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하며, 주민자치위원회위원도 공무원 등과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0조제1항, 제2항 및 제86조제1항).

너.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시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1매씩 게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 신설).

더. 어깨띠 외에는 선거운동용 소품의 사용을 금지함(안 제68조제2항).

러.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허용함. 다만,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교양강좌 등을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함(안 제86조제2항).

머. 선거기간중 후보자의 성명·사진·주소·학력·경력 등을 게재한 명함을 후보자가 직접 줄 수 있도록 함(안 제93조제1항 단서 신설).

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후 보전해야 하는 선거비용의 범위에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현수막 제작비, 전화홍보비 및 선거용 인터넷홈페이지 관리비용을 추가함(안 제122조의2제1항제4호·제8호 및 제9호 신설).

서. 시·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각각 1표씩을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함(안 제146조).

어. 재·보궐 선거시에도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고,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도 투표용지에는 기호·정당명을 표시하도록 함(제150조제4항).

저.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의석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대하여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한 정당에게 비례대표 총의석의 2/3이상이 배분되지 않도록 함(안 제190조제4항 및 제5항)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定期刊行物を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選舉記事審議委員會의 운영 기간중에 定期刊行物の登錄등에 관한法律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一般日刊新聞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一般週刊新聞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定期刊行物 1부를, 그 외의 定期刊行物を 발행하는 때에는 選舉記事審議委員會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選舉記事審議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定期刊行物を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選舉記事審議委員會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4제1항 본문중 “피해를 받은 候補者”를 “피해를 받은 政黨(中央黨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候補者”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候補者나”를 “당해 政黨, 候補者 또는”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다만, 候補者가”를 “다만, 당해 政黨 또는 候補者가”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당해 候補者나”를 “당해 政黨, 候補者,”로, “당해 候補者와”를 “당해 政黨 또는 候補者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보조를 받는 團體”를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

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와 제2의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國民健康保險法에 의하여 설립된 國民健康保險公團

6. 제8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단체 중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제10조의2제1항중 “選舉期間開始日부터”를 “選舉期間開始日前 10일부터”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14인미만이 되는 廣域市 및 道는 그 定數를 14인으로 한다.”를 “16인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6인으로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도서지역인 면·동과 군사분계선지역내에 위치한 대성동마을이 소속한 경기도 파주군 군내면을 제외한다)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여 1인으로 하고,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自治區·市·郡議會議員定數가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수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과 동을 통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제2항중 “人口 5千미만의 洞이 인접한 邑·面·洞과”를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이 증원되는 읍과 동에서 선출하는 議員數는 選舉區別 1인으로 하되,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을 통합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지 않는 읍·면·동에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하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는 경우에는 통합하기 전의 읍·면·동을 각각의

選舉區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중 “地方自治團體의 長選舉는”을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舉는”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長選舉”를 “議會議員 및 長의 選舉”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중 “地方自治團體의 長選舉에 있어서는 選舉日전 22日, 地方議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選舉日전 19日”을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舉에 있어서는 選舉日전 22일”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중 “지체없이”를 “24시간 이내에”로 한다.

제4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政黨이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候補者를 추천하는 때에는 政黨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女性候補者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중 “地方自治團體의 長選舉에 있어서는 選舉日전 16日, 地方議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選舉日전 13日”을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舉에 있어서는 選舉日전 16일”로 하고, 동조제4항제4호중 “所得稅 및 財産稅”를 “所得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제8항 본문중 “제4호”를 “제5호로”, “아니한 登錄申請은”을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등록신청은”으로 하고, 동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과 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⑩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政黨은 選舉期間開始日전 90일부터 본인 또는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소속 黨員의 전과기록을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당해 경찰

관서의 長은 刑의失效等에關한法律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回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回報받은 전과기록은 候補者登錄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候補者에 대하여는 候補者登錄마감후 지체없이 당해 選舉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候補者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없이 回報하여야 한다.

②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回報받은 서류를 選舉區民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選舉期間이 아닌 때에는 이를 누구에게든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제1항제2호중 “定數範圍를 넘어 추천한 것이 발견되거나”를 “定數範圍를 넘어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女性候補者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경우에”를 “경우 및 地方議會議員이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의 選舉에 立候補하는 경우에”로 하고, 동항제5호중 “農業協同組合·水産業協同組合·畜産業協同組合·林業協同組合·葉煙草生産協同組合 또는 人蔘協同組合(이들 조합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을 “農業協同組合法·水産業協同組合法·山林組合法·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中央會長이나 聯合會長”을 “中央會長”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3호중 “400萬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1千500萬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중 “地方議會議員選舉”를 “地域區國會議員選舉, 地域區市·道議員選舉, 自治區·市·郡議員選舉”로, “20이상인 때”를 “15 이상인 때”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9호중 “醫療保險法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 및 醫療保險聯合會와 國民醫療保險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民醫療保險管理公團의”를 “國民健康保險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民健康保險公團의”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鄉土豫備軍 小隊長級이상의 幹部”를 “鄉土豫備軍 小隊長級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으로, “6月 이내에는”을 “6월 이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選舉日까지)에는”으로 한다.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제64조제1항 본문중 “投票用紙의 候補者의”를 “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의”로, “印刷할 候補者의”를 “인쇄할 政黨 또는 候補者의”로, “經歷(學歷을”을 “경력[학력을”로, “修學期間을”을 “수학기간(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은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을”로, “이하 같다)”를 “이하 같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洞에 있어서는 人口密集狀態”를 “인구밀집상태”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政黨推薦候補者는”을 “政黨推薦候補者와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地域區國會議員選舉”를 “地域區國會議員選舉,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로 하며, 동조제2항중 “地域區國會議員選舉”를 “地域區國會議員選舉와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로 한다.

제66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候補者(大統領選舉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를 “候補者가”로 하며, 동조제6항제2호중 “地域區國會議員選舉와”를 “地域區國會議員選舉,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 및”으로 하고, 동조제10항중 “작성·배부 및 費用補

墳”을 “작성 및 배부”로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현수막) ①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제외한다)의 보궐선거등에 있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게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 및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당해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하며,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과 선거의 종류, 선거구명외의 사항은 게재할 수 없다.

③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8조의 제목“(標札·手旗등)”을“(어깨띠)”로 하고, 동조제2항중 “標識板·標札·手旗·腕章·어깨띠·마스코트 기타 選舉運動에 사용하는 小品을 두르거나 달거나 지닐 수 있다. 이 경우 第64條(宣傳壁報)第8項의 規定에 의한 보완첩부용 宣傳壁報를 標識板에 첩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를 “어깨띠를 두를 수 있다. 이 경우 候補者가 아닌 자는 신분증명서를 패용하여야 하며, 그 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제6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標識板·標札·手旗·腕章·어깨띠 및 마스코트 등의”를 “어깨띠의”로 한다.

제72조제1항중 “候補者(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를, 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地域區市·道議員候補者를 말한다)를 選舉人에게 알리기 위하여 候補者의 演說”을 “政黨 또는 候補者(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를 말한다)를 選舉人에게 알리기 위하여 候補者(比例

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이 당해 選舉의 候補者중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演說”로,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候補者가”를 “모든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公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政黨 또는 候補者가”로 한다.

제75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合同演說會를 개최하는 選舉管理委員會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候補者의 연설을 수화로 통역하여야 한다.

제8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候補者(比例代表國會議員選舉와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와”를 “候補者(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중 “第1項 各號의 1”을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의 노동조합과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의2제6항중 “한다.”를 “하고,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화로 통역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統·里·班의 長과”를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로, “醫療保險法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 및 醫療保險聯合會와 國民醫療保險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民醫療保險管理公團의”를 “國民健康保險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民健康保險公團의”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중 “敎養講座, 市·道政 또는 自治區·市·郡政活動報告會,”를 “교양강좌,”로 하며, 동호라목중 “행위”를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選舉日까지”를 “選舉日

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로 한다.

제87조 단서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를 개최할 수 있는 團體는”을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단체가 아닌 단체는”으로 한다.

제9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選舉期間중 候補者의 성명·사진·주소·전화번호·학력·경력·현직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候補者가 직접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3조제1항중 “말한다)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을 “말한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주민자치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5조제2항중 “누구든지 第68條(標札·手旗등)第2項”을 “누구든지 제68조 제2항”으로 한다.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중 “國會議員·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職務상의 행위로서 개최하는 議政活動報告會등 集會”를 “國會議員 및 地方議會議員의 직무상의 행위로서 개최하는 議政報告會”로 한다.

제122조의2제1항제7호를 제10호로, 동항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의 제작비용
8. 제82조의3의 규정에 의한 選舉運動을 위하여 候補者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비용
9. 제10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選舉運動을 위하여 허용된 전화를 이용한 選舉運動費用

제146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地域區市·道議員選舉 및 比例代表

市·道議員選舉마다 1인 1표로 한다.

제147조제9항중 “一般職公務員(公安職群의 公務員을 제외한다)·技能職公務員 또는 敎職員중에서”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國家公務員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地方公務員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일반직공무원중公安직군의 공무원과 특정직 및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2. 각급학교의 교직원
3. 銀行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직원
4.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등의 직원

제148조제1항중 “7日(地方議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6日)”을 “7일”로 하고, 동조제5항중 “一般職公務員(技能職公務員을 포함하되, 公安職群의 公務員을 제외한다) 또는 敎員중에서”를 “제147조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로 한다.

제150조의 제목중 “候補者”를 “政黨·候補者”로 하고, 동조제1항 단서중 “표시하고,”를 “표시하고,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의 기호와 政黨名을 표시하며,”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게재할 候補者의”를 “게재할 政黨 또는 候補者의”로, “所屬政黨名과”를 “政黨名과”로 한다.

제150조제3항 본문중 “順으로 한다.”를 “순으로 하고, 政黨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마감일 현재 國會에서 議席을 가지고 있는 政黨, 國會에서 議席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政黨의 순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 단서중 “候補者를”을 “政黨 또는 候補者를”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그 候補者의 記號·所屬政黨名”을 “그 기호·政黨名”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가 政黨 또는 候補者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마감일 현재 國會에 議席을 갖고 있는 政黨이나 그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 사이의 게재순위는 國會에서의 多數議席順으로 하되, 그 政黨이 國會에 交渉團體를 구성한 경우 政黨別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며, 國會에서 議席을 갖고 있지 아니한 政黨이나 그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政黨의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하고, 無所屬候補者 사이의 게재순위는 候補者姓名의 가나다순에 의한다. 이 경우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政黨이 候補者를 추천하지 아니한 選舉區의 投票用紙에는 당해 政黨의 기호와 政黨名만 게재한다.

제154조제1항 전단중 “10日(地方議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8日)”을 “10일”로 한다.

제157조제4항중 “1人の 候補者를”을 “1인의 候補者(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를”으로 한다.

제158조제1항 전단중 “1人の 候補者를”을 “1인의 候補者(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으로 한다.

제174조제2항중 “一般職公務員(公安職群의 公務員을 제외한다)·技能職公務員 또는 敎職員과 銀行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銀行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職員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를 “제147조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하되,”로 하고, 동조제3항중 “敎員”을 “교직원”으로 한다.

제175조제1항중 “投票函이 모두 到着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投票函의 到着順位에 따라 행한다. 다만, 交通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 投票函의 到着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投票函의 3分の 2이상이 到着되면 開票를 開始할 수 있다.”를 “송부되는 投票函의 3분의 1 이상이 도착되면 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投票函의 도착순위에 따라 개표한다.”로

한다.

제178조제1항중 “하며 하나의 投票區의 投票數 計算이 끝난 후 다음의 投票函을 開函하되, 동시에 計票하는 投票函은 4개이내로 한다.”를 “구분하여 投票數를 계산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候補者別 得票數의”를 “候補者別 득표수(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政黨別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로 하며, 동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選舉管理委員會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9조제1항제6호중 “候補者欄외에”를 “候補者(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欄외에”로 한다.

제181조제9항 단서중 “地方議會議員選舉에”를 “地域區市·道議員選舉 및 自治區·市·郡議員選舉에”로 한다.

제18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開票事務員 및”을 각각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으로 한다.

제184조 본문중 “候補者別로”를 “候補者(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을 말한다)別로”로 한다.

제185조제2항 전단중 “候補者別”을 “候補者(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政黨을 말한다)別”로 하고, 동항 후단중 “國會議員選舉와 比例代表市·道議員의 議席配分과 관련있는 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을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송부하고, 比例代表市·道議員의 議席配分과 관련있는 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政黨別 得票數를 計算·公表하고 選舉綠을 작성하여야 한다.”를 “송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6조 본문중 “選舉錄(大統領選舉 및 市·道知事選舉를 제외한다)”을 “選舉錄”으로, “選舉錄(市·道知事選舉와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한한다)”을

“選舉錄”으로, “選舉錄(大統領選舉 또는 比例代表國會議員選舉에 한한다)”을 “選舉錄”으로 한다.

제19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市·道選舉管理委員會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政黨(이하 이 조에서 “議席割當政黨”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選舉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比例代表市·道議員定數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整數의 議席을 그 政黨에 먼저 배분하고 殘餘 議席은 端數가 큰 순으로 각 議席割當政黨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端數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政黨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政黨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議席割當政黨의 득표수를 모든 議席割當政黨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제190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 端數가 있는 경우의 議席配分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0조제6항중 “第2項·第4項 내지 第9項”을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管轄市·道選舉管理委員會는 제출된 政黨別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名簿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政黨에 배분된 比例代表市·道議員議席의 當選人을 결정한다.

⑦政黨에 배분된 比例代表市·道議員議席數가 그 政黨이 추천한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數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議席은 空席으로 한다.

⑧市·道選舉管理委員會는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再投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投票區의 選舉人數를 당해

시·도의 選舉人數로 나눈 수에 比例代表市·道議員議席定數를 곱하여 얻은 수의 整數(1미만의 端數는 1로 본다)를 比例代表市·道議員議席定數에서 뺀 다음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比例代表市·道議員議席을 배분하고 當選人을 결정한다. 다만, 比例代表市·道議員議席配分이 배제된 政黨중 再投票결과에 따라 議席割當政黨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政黨마다 比例代表市·道議員定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整數(1미만의 端數는 1로 본다)를 별도로 빼야한다.

제192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比例代表國會議員이 國會議長으로 당선되어 國會法 규정에 의하여 黨籍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3조제2항중 “地域區國會議員選舉와”를 “地域區國會議員選舉,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 및”으로 한다.

제194조의 제목중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를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 및 比例代表市·道議員議席의”로 하고, 동조제1항중 “第190條(地方議會議員當選인의 決定·公告·통지)”를 “제190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第189條(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인의 決定·公告·통지)의 規定에 의한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 및 그 當選人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當選無效의 判決이 있는 때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를 “제189조 및 제190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 또는 比例代表市·道議員議席의 배분 및 그 當選人決定의 위법을 이유로 當選無效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제197조의 사유로 인한 再選舉를 실시한 때에는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比例代表國會議員選舉 또는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 제195조제1호 및 제2호 전단(제188조제4항 후단의 경우를

제외한다)·제196조 또는 제198조의 사유로 인한 選舉를 실시한 때에는 당초 選舉에서의 득표수와 再選舉등에서의 득표수를 합하여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그 득표비율에 議席定數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政黨이 이미 배분받은 議席數를 뺀 수가 큰 순위에 따라 殘餘議席을 배분하고 當選人을 결정한다. 이 경우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제190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5조제1호중 “당해 國會議員地域區를, 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당해 市·道議員地域區를 말한다)”를 “당해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로 한다.

제197조제3항중 “추천하여야 한다.”를 “추천하고,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合黨전 政黨이 제출한 候補者名簿중 하나를 추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候補者の 記號는”을 “候補者(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호는”으로 한다.

제198조제1항중 “國會議員地域區, 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市·道議員地域區)의”를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의”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候補者が 있는 경우 第194條(當選人의 再決定과 比例代表 國會議員議席의 再配分)”을 “候補者(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候補者名簿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제194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再投票가 당해 選舉區의 選舉結果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再投票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當選人을 결정한다. 다만, 國會議員選舉에 있어 제1항의 사유가 地域區國會議員選舉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으나 比例代表國會議員選舉에는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再投票전에 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을 결정하고 再投票를 실시한다.

제205조제1항중 “候補者”를 “候補者(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候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07조제1항중 “候補者는”을 “候補者(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으로 한다.

제211조제2항중 “候補者の 掲載順位등”을 “政黨·候補者の 掲載順位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選舉중”을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の 選舉(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를 제외한다)중”으로 한다.

제213조제4항 후단중 “投票用紙의 候補者”를 “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로 한다.

제216조의 제목중 “4개 選舉의”를 “4개 이상 選舉의”로 하고, 동조제1항중 “4개”를 “4개 이상”으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4개의 選舉”를 “임기만료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の 選舉”로, “하여금 2개 選舉의”를 “하여금 地方議會議員選舉(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를 포함한다)의”로, “나머지 2개 選舉의”를 “地方自治團體의 長の 選舉의”로, “먼저 교부받은 2개 選舉의 投票用紙에 각각 1인의 候補者를 선택하는 標를 한 후 각각 選舉別로 設置된 投票函에 투입한 후 나머지 2개 選舉”를 “地方議會議員選舉의 投票用紙에 각각 1인의 候補者(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선택하는 標를 한 후 각각 選舉別(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설치된 投票函에 투입한 후 地方自治團體의 長の 選舉”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중 “第1項 및 第2項외에 4개 選舉”를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4개 이상 選舉”로, “방법”을 “방법과 제3항의 개표절차”로 한다.

③임기만료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の 選舉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自治區·市·郡議員選舉의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178조제1항·제2항 및 제2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읍·면·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

제219조 제1항중 “地方議會議員選舉”를 “地域區市·道議員選舉, 自治區·市·郡議員選舉”로, “市·道知事選舉에”를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 및 市·道知事選舉에”로 하고, 동조 제2항중 “地方議會議員選舉”를 “地域區市·道議員選舉, 自治區·市·郡議員選舉”로, “市·道知事選舉”를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와 市·道知事選舉”로 한다.

제222조 제2항중 “市·道知事選舉”를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 및 市·道知事選舉”로, “地方議會議員選舉”를 “地域區市·道議員選舉, 自治區·市·郡議員選舉”로 한다.

제223조 제1항중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再配分”을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 및 比例代表市·道議員議席의 再配分”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市·道知事選舉”를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 및 市·道知事選舉”로, “地方議會議員選舉”를 “地域區市·道議員選舉, 自治區·市·郡議員選舉”로 한다.

제255조 제1항 제4호중 “第7項”을 “제8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제4호중 “4개”를 “4개 이상”으로 한다.

제256조 제2항 제1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3호가목중 “第4項”을 “제6항”으로 한다.

가.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자

제261조 제3항 제2호다목중 “第68條(標札·手旗등)”을 “제68조”로, “標識板·標札·手旗등을”를 “어깨띠를”으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定期刊行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27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제272조제5항중 “관한 當事者의 성명·住所등 인적사항의 제출을 關係郵遞局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를 “관련된 자의 성명·주소등 인적사항과 발송통수·배달지역 기타 選舉犯罪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우체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우체국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중 “중지한 경우에는 郵便法 第50條(郵便取扱拒否의 罪등)의 規定을, 宣傳物의 郵送에 관한 當事者의 인적사항 등을 제출한 때에는 郵便法 第51條의2(秘密漏泄의 罪)”를 “중지하거나 宣傳物의 우송에 관련된 자의 인적사항 등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郵便法 第3조·제50조·제51조·제51조의2, 郵便換法 第19조 및 通信秘密保護法 第3조”로 한다.

제272조의2제6항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各級選舉管理委員會委員·職員은 選舉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자를 제외한다)이 선거기간(선거부정감시단원의 경우 선거부정감시단을 두는 시기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재해보상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278조제4항중 “하며, 우선 選舉區域이 작은 補闕選舉등에 적용하되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도의회의원 증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6265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 1]에 의하여 하나의 자치구·시·군 안에서 2개의 국회의원지역구가 1개로 통합되거나, 3개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개로 통합된 경우 그 중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정수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수에 1인을 더한 수로 한다.

[別表 2]

市・道議會議員地域選舉區區域表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서울特別市議會議員	
鍾路區 第1選舉區	清雲洞, 孝子洞, 社稷洞, 三清洞, 付岩洞, 平倉洞, 母岳洞, 橋南洞, 嘉會洞
鍾路區 第2選舉區	鍾路1·2·3·4街洞, 鍾路5·6街洞, 梨花洞, 惠化洞, 明倫3街洞, 昌信第1洞, 昌信第2洞, 昌信第3洞, 崇仁第1洞, 崇仁第2洞
中區 第1選舉區	小公洞, 明洞, 光熙洞, 乙支路3·4·5街洞, 新堂第1洞, 新堂第5洞, 新堂第6洞, 黃鶴洞, 中林洞
中區 第2選舉區	會賢洞, 筆洞, 獎忠洞, 新堂第2洞, 新堂第3洞, 新堂第4洞
龍山區 第1選舉區	南營洞, 青坡第1洞, 青坡第2洞, 元曉路第1洞, 元曉路第2洞, 孝昌洞, 龍門洞, 漢江路第1洞, 漢江路第2洞, 漢江路第3洞, 二村第1洞, 二村第2洞
龍山區 第2選舉區	厚岩洞, 龍山2街洞, 梨泰院第1洞, 梨泰院第2洞, 漢南第1洞, 漢南第2洞, 西水庫洞, 普光洞
城東區 第1選舉區	往十里第1洞, 往十里第2洞, 道洗洞, 馬場洞, 沙斤洞, 杏堂第1洞, 杏堂第2洞
城東區 第2選舉區	鷹峰洞, 金湖1街洞, 金湖2街洞, 金湖3街洞, 金湖4街洞, 玉水第1洞, 玉水第2洞
城東區 第3選舉區	聖水1街第1洞, 聖水1街第2洞, 聖水2街第1洞, 聖水2街第3洞, 松亭洞, 龍踏洞
廣津區 第1選舉區	中谷第1洞, 中谷第2洞, 中谷第3洞, 中谷第4洞
廣津區 第2選舉區	陵洞, 九宜第2洞, 廣壯洞, 君子洞
廣津區 第3選舉區	九宜第1洞, 九宜第3洞, 紫陽第1洞, 紫陽第2洞
廣津區 第4選舉區	紫陽第3洞, 老遊第1洞, 老遊第2洞, 華陽洞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東大門區 第1選舉區	新設洞, 龍頭第1洞, 龍頭第2洞, 祭基第1洞, 祭基第2洞, 清涼里第1洞, 清涼里第2洞
東大門區 第2選舉區	回基洞, 徽慶第1洞, 徽慶第2洞, 里門第1洞, 里門第2洞, 里門第3洞
東大門區 第3選舉區	典農第1洞, 典農第2洞, 典農第3洞, 典農第4洞, 踏十里第1洞, 踏十里第3洞, 踏十里第5洞
東大門區 第4選舉區	踏十里第2洞, 踏十里第4洞, 長安第1洞, 長安第2洞, 長安第3洞, 長安第4洞
中浪區 第1選舉區	面牧第3洞, 面牧第4洞, 面牧第7洞, 面牧第8洞, 忘憂第3洞
中浪區 第2選舉區	面牧第1洞, 面牧第2洞, 面牧第5洞, 面牧第6洞, 上鳳第2洞
中浪區 第3選舉區	中和第1洞, 中和第2洞, 中和第3洞, 墨第1洞, 墨第2洞
中浪區 第4選舉區	上鳳第1洞, 忘憂第1洞, 忘憂第2洞, 新內第1洞, 新內第2洞
城北區 第1選舉區	城北第1洞, 城北第2洞, 東小門洞, 三仙第1洞, 三仙第2洞, 東仙第1洞, 東仙第2洞, 安岩洞, 普門洞
城北區 第2選舉區	敦岩第2洞, 貞陵第1洞, 貞陵第2洞, 貞陵第3洞, 貞陵第4洞, 吉音第1洞, 吉音第2洞
城北區 第3選舉區	敦岩第1洞, 吉音第3洞, 鍾岩第1洞, 鍾岩第2洞, 月谷第1洞, 月谷第2洞, 月谷第3洞, 月谷第4洞, 上月谷洞
城北區 第4選舉區	長位第1洞, 長位第2洞, 長位第3洞, 石串第1洞, 石串第2洞
江北區 第1選舉區	樊第1洞, 樊第2洞, 水踰第2洞, 水踰第3洞
江北區 第2選舉區	水踰第1洞, 水踰第4洞, 水踰第5洞, 水踰第6洞
江北區 第3選舉區	彌阿第1洞, 彌阿第2洞, 彌阿第5洞, 彌阿第6·7洞, 彌阿第8洞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江 北 區 第4選舉區	彌阿第3洞, 彌阿第4洞, 彌阿第9洞, 樊第3洞
道 峰 區 第1選舉區	倉第1洞, 倉第4洞, 倉第5洞
道 峰 區 第2選舉區	雙門第1洞, 雙門第3洞, 倉第2洞, 倉第3洞
道 峰 區 第3選舉區	雙門第2洞, 雙門第4洞, 放鶴第3洞, 放鶴第4洞
道 峰 區 第4選舉區	放鶴第1洞, 放鶴第2洞, 道峰第1洞, 道峰第2洞
蘆 原 區 第1選舉區	月溪第1洞, 月溪第2洞, 月溪第3洞, 月溪第4洞, 孔陵第1洞, 孔陵第2洞, 孔陵第3洞
蘆 原 區 第2選舉區	下溪第1洞, 下溪第2洞, 中溪本洞, 中溪第2洞, 中溪第3洞
蘆 原 區 第3選舉區	中溪第1洞, 中溪第4洞, 上溪第2洞, 上溪第3洞, 上溪第4洞, 上溪第5洞
蘆 原 區 第4選舉區	上溪第1洞, 上溪第6洞, 上溪第7洞, 上溪第8洞, 上溪第9洞, 上溪第10洞
恩 平 區 第1選舉區	碌磻洞, 鷹岩第1洞, 鷹岩第2洞, 鷹岩第3洞
恩 平 區 第2選舉區	鷹岩第4洞, 新寺第1洞, 新寺第2洞, 繪山洞, 水色洞
恩 平 區 第3選舉區	佛光第3洞, 葛峴第1洞, 葛峴第2洞, 龜山洞, 津寬內洞, 津寬外洞
恩 平 區 第4選舉區	佛光第1洞, 佛光第2洞, 大棗洞, 驛村第1洞, 驛村第2洞
西 大 門 區 第1選舉區	忠正路洞, 天然洞, 北阿峴第1洞, 北阿峴第2洞, 北阿峴第3洞, 大新洞, 滄川洞
西 大 門 區 第2選舉區	延禧第1洞, 延禧第2洞, 延禧第3洞, 弘濟第1洞, 弘濟第2洞, 弘濟第4洞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西大門區 第3選舉區	弘濟第3洞, 弘恩第1洞, 弘恩第2洞, 弘恩第3洞
西大門區 第4選舉區	南加佐第1洞, 南加佐第2洞, 北加佐第1洞, 北加佐第2洞
麻浦區 第1選舉區	桃花第2洞, 龍江洞, 大興洞, 鹽里洞, 老姑山洞, 新水洞
麻浦區 第2選舉區	阿峴第1洞, 阿峴第2洞, 阿峴第3洞, 孔德第1洞, 孔德第2洞, 新孔德洞, 桃花第1洞
麻浦區 第3選舉區	倉前洞, 上水洞, 西橋洞, 東橋洞, 合併洞, 望遠第1洞
麻浦區 第4選舉區	望遠第2洞, 延南洞, 城山第1洞, 城山第2洞, 上岩洞
陽川區 第1選舉區	木第2洞, 木第3洞, 木第4洞, 木第5洞, 木第6洞
陽川區 第2選舉區	木第1洞, 新亭第1洞, 新亭第2洞, 新亭第6洞, 新亭第7洞
陽川區 第3選舉區	新月第1洞, 新月第3洞, 新月第4洞, 新月第5洞, 新月第7洞
陽川區 第4選舉區	新月第2洞, 新月第6洞, 新亭第3洞, 新亭第4洞, 新亭第5洞
江西區 第1選舉區	禾谷第1洞, 禾谷第2洞, 禾谷第3洞, 禾谷第7洞, 禾谷第8洞, 鉢山第1洞
江西區 第2選舉區	登村第2洞, 禾谷本洞, 禾谷第4洞, 禾谷第5洞, 禾谷第6洞, 鉢山第2洞
江西區 第3選舉區	加陽第1洞, 空港洞, 傍花第1洞, 傍花第2洞, 傍花第3洞
江西區 第4選舉區	鹽倉洞, 登村第1洞, 登村第3洞, 加陽第2洞, 加陽第3洞
九老區 第1選舉區	九老第3洞, 九老第4洞, 九老第6洞, 加里峰第1洞, 加里峰第2洞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九 老 區 第2選舉區	新道林洞, 九老第1洞, 九老第2洞, 九老第5洞, 九老本洞
九 老 區 第3選舉區	高尺第1洞, 高尺第2洞, 開峰第2洞, 開峰第3洞, 開峰本洞
九 老 區 第4選舉區	開峰第1洞, 梧柳第1洞, 梧柳第2洞, 水宮洞
衿 川 區 第1選舉區	加山洞, 禿山第1洞, 禿山第2洞, 禿山第3洞, 禿山第4洞, 禿山本洞
衿 川 區 第2選舉區	始興第1洞, 始興第2洞, 始興第3洞, 始興第4洞, 始興第5洞, 始興本洞
永 登 浦 區 第1選舉區	永登浦第1洞, 道林第1洞, 道林第2洞, 文來第1洞, 文來第2洞, 新吉第2洞, 新吉第3洞
永 登 浦 區 第2選舉區	永登浦第2洞, 永登浦第3洞, 堂山第1洞, 堂山第2洞, 楊坪第1洞, 楊坪第2洞
永 登 浦 區 第3選舉區	汝矣洞, 新吉第1洞, 新吉第4洞, 新吉第5洞, 新吉第7洞
永 登 浦 區 第4選舉區	新吉第6洞, 大林第1洞, 大林第2洞, 大林第3洞
銅 雀 區 第1選舉區	鷺梁津第1洞, 鷺梁津第2洞, 上道第2洞, 上道第4洞, 本洞
銅 雀 區 第2選舉區	上道第3洞, 大方洞, 新大方第1洞, 新大方第2洞
銅 雀 區 第3選舉區	上道第1洞, 上道第5洞, 舍堂第3洞, 舍堂第4洞, 舍堂第5洞
銅 雀 區 第4選舉區	黑石第1洞, 黑石第2洞, 黑石第3洞, 銅雀洞, 舍堂第1洞, 舍堂第2洞
冠 岳 區 第1選舉區	奉天本洞, 奉天第1洞, 奉天第4洞, 奉天第8洞, 奉天第9洞, 奉天第10洞, 新林第5洞
冠 岳 區 第2選舉區	奉天第2洞, 奉天第3洞, 奉天第5洞, 奉天第6洞, 奉天第7洞, 奉天第11洞, 南峴洞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冠 岳 區 第3選舉區	新林第3洞, 新林第4洞, 新林第7洞, 新林第8洞, 新林第11洞, 新林第12洞, 新林第13洞
冠 岳 區 第4選舉區	新林本洞, 新林第1洞, 新林第2洞, 新林第6洞, 新林第9洞, 新林第10洞
瑞 草 區 第1選舉區	蠶院洞, 盤浦第1洞, 盤浦第3洞, 盤浦第4洞
瑞 草 區 第2選舉區	盤浦本洞, 盤浦第2洞, 方背本洞, 方背第1洞, 方背第4洞
瑞 草 區 第3選舉區	瑞草第2洞, 瑞草第4洞, 良才第1洞, 良才第2洞, 內谷洞
瑞 草 區 第4選舉區	瑞草第1洞, 瑞草第3洞, 方背第2洞, 方背第3洞
江 南 區 第1選舉區	新沙洞, 論峴第1洞, 論峴第2洞, 狎鷗亭第1洞, 狎鷗亭第2洞, 清潭第1洞, 清潭第2洞
江 南 區 第2選舉區	三成第1洞, 三成第2洞, 驛三第1洞, 驛三第2洞, 道谷第1洞, 道谷第2洞
江 南 區 第3選舉區	大峙第1洞, 大峙第2洞, 大峙第3洞, 大峙第4洞, 開浦第3洞, 逸院第2洞
江 南 區 第4選舉區	開浦第1洞, 開浦第2洞, 開浦第4洞, 逸院本洞, 逸院第1洞, 水西洞, 細谷洞
松 坡 區 第1選舉區	風納第1洞, 風納第2洞, 芳萐第1洞, 芳萐第2洞, 五輪洞, 蠶室第4洞
松 坡 區 第2選舉區	松坡第1洞, 松坡第2洞, 蠶室本洞, 蠶室第1洞, 蠶室第2洞, 蠶室第3洞, 蠶室第5洞, 蠶室第6洞, 蠶室第7洞
松 坡 區 第3選舉區	巨餘第1洞, 巨餘第2洞, 馬川第1洞, 馬川第2洞, 長旨洞
松 坡 區 第4選舉區	梧琴洞, 可樂本洞, 可樂第2洞, 文井第1洞
松 坡 區 第5選舉區	石村洞, 三田洞, 可樂第1洞, 文井第2洞,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江 東 區 第1選舉區	江一洞, 高德第1洞, 高德第2洞, 岩寺第1洞, 岩寺第2洞, 岩寺第3洞, 岩寺第4洞
江 東 區 第2選舉區	上一洞, 明逸第1洞, 明逸第2洞, 吉第1洞, 吉第2洞
江 東 區 第3選舉區	千戶第1洞, 千戶第2洞, 千戶第3洞, 千戶第4洞
江 東 區 第4選舉區	城內第1洞, 城內第2洞, 城內第3洞, 遁村第1洞, 遁村第2洞
釜山廣域市議會議員	
中 區 第1選舉區	中央洞, 大廳洞, 瀛州第1洞, 瀛州第2洞
中 區 第2選舉區	東光洞, 寶水洞, 富平洞, 光復洞, 南浦洞
西 區 第1選舉區	東大新第1洞, 東大新第2洞, 東大新第3洞, 西大新第1洞, 西大新第2洞, 西大新第3洞, 西大新第4洞, 富民洞
西 區 第2選舉區	峨嵋洞, 草場洞, 忠武洞, 南富民第1洞, 南富民第2洞, 南富民第3洞, 岩南洞
東 區 第1選舉區	草梁第1洞, 草梁第2洞, 草梁第3洞, 草梁第4洞, 草梁第6洞, 水晶第1洞, 水晶第2洞, 水晶第3洞, 水晶第4洞
東 區 第2選舉區	水晶第5洞, 佐川第1洞, 佐川第4洞, 凡一第1洞, 凡一第2洞, 凡一第4洞, 凡一第5洞, 凡一第6洞
影 島 區 第1選舉區	南港洞, 瀛仙第1洞, 瀛仙第2洞, 新仙第1洞, 新仙第2洞, 新仙第3洞, 蓬萊第1洞, 蓬萊第3洞, 蓬萊第4洞, 青鶴第1洞
影 島 區 第2選舉區	青鶴第2洞, 東三第1洞, 東三第2洞, 東三第3洞
釜 山 鎮 區 第1選舉區	釜田第1洞, 凡田洞, 蓮池洞, 草邑洞, 楊亭第1洞, 楊亭第2洞
釜 山 鎮 區 第2選舉區	釜岩第1洞, 釜岩第3洞, 堂甘第1洞, 堂甘第2洞, 堂甘第3洞, 堂甘第4洞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釜山鎮區 第3選舉區	釜田第2洞, 田浦第1洞, 田浦第2洞, 田浦第3洞, 伽倻第1洞, 凡川第1洞, 凡川第2洞, 凡川第4洞
釜山鎮區 第4選舉區	伽倻第2洞, 伽倻第3洞, 開琴第1洞, 開琴第2洞, 開琴第3洞
東萊區 第1選舉區	壽民洞, 福山洞, 明倫第1洞, 明倫第2洞
東萊區 第2選舉區	溫泉第1洞, 溫泉第2洞, 溫泉第3洞, 社稷第1洞, 社稷第2洞, 社稷第3洞
東萊區 第3選舉區	安樂第1洞, 安樂第2洞, 鳴藏第1洞, 鳴藏第2洞
南區 第1選舉區	大淵第1洞, 大淵第2洞, 大淵第3洞, 大淵第4洞, 大淵第5洞, 大淵第6洞
南區 第2選舉區	龍湖第1洞, 龍湖第2洞, 龍湖第3洞, 龍湖第4洞, 龍塘洞
南區 第3選舉區	戡蠻第1洞, 戡蠻第2洞, 牛岩第1洞, 牛岩第2洞, 門峴第1洞, 門峴第2洞, 門峴第3洞, 門峴第4洞
北區 第1選舉區	龜浦第1洞, 龜浦第2洞, 龜浦第3洞, 金谷洞, 華明洞
北區 第2選舉區	德川第1洞, 德川第2洞, 德川第3洞, 萬德第1洞, 萬德第2洞, 萬德第3洞
海雲臺區 第1選舉區	佑第1洞, 佑第2洞, 中第1洞, 中第2洞, 佐洞, 松亭洞
海雲臺區 第2選舉區	盤如第1洞, 盤如第2洞, 盤如第3洞, 盤松第1洞, 盤松第2洞, 盤松第3洞, 栽松第1洞, 栽松第2洞
沙下區 第1選舉區	槐亭第1洞, 槐亭第2洞, 槐亭第3洞, 槐亭第4洞
沙下區 第2選舉區	堂里洞, 下端第1洞, 下端第2洞
沙下區 第3選舉區	新平第1洞, 新平第2洞, 舊平洞, 甘川第1洞, 甘川第2洞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沙 下 區 第4選舉區	長林第1洞，長林第2洞，多大第1洞，多大第2洞
金 井 區 第1選舉區	書第1洞，書第2洞，書第3洞，書第4洞，錦絲洞，釜谷第1洞，釜谷第4洞
金 井 區 第2選舉區	釜谷第2洞，釜谷第3洞，仙杜邱洞，青龍老圃洞，南山洞
金 井 區 第3選舉區	長箭第1洞，長箭第2洞，長箭第3洞，久瑞第1洞，久瑞第2洞，金城洞
江 西 區 第1選舉區	大渚一洞，大渚二洞，江東洞
江 西 區 第2選舉區	鳴旨洞，鴛洛洞，菴山洞，天加洞
蓮 堤 區 第1選舉區	巨堤第1洞，巨堤第2洞，巨堤第3洞，巨堤第4洞，蓮山第2洞，蓮山第4洞，蓮山第5洞
蓮 堤 區 第2選舉區	蓮山第1洞，蓮山第3洞，蓮山第6洞，蓮山第7洞，蓮山第8洞，蓮山第9洞
水 營 區 第1選舉區	南川第1洞，南川第2洞，廣安第1洞，廣安第2洞，廣安第3洞，廣安第4洞
水 營 區 第2選舉區	水營洞，望美第1洞，望美第2洞，民樂洞
沙 上 區 第1選舉區	三樂洞，毛羅第1洞，毛羅第2洞，毛羅第3洞，德浦第1洞，德浦第2洞
沙 上 區 第2選舉區	掛法洞，周禮第1洞，周禮第2洞，周禮第3洞
沙 上 區 第3選舉區	甘田第1洞，甘田第2洞，鶴章洞，嚴弓洞
機 張 郡 第1選舉區	機張邑，鐵馬面
機 張 郡 第2選舉區	長安邑，日光面，鼎冠面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大邱廣域市議會議員	
中 區 第1選舉區	東仁1·2·4街洞, 東仁3街洞, 三德洞, 城內1洞, 南山1洞, 大鳳1洞, 大鳳2洞
中 區 第2選舉區	城內2洞, 城內3洞, 大新洞, 南山2洞, 南山3洞, 南山4洞
東 區 第1選舉區	新岩1洞, 新岩2洞, 新岩3洞, 新岩4洞, 新岩5洞, 新川1·2洞, 新川3洞, 新川4洞
東 區 第2選舉區	孝睦1洞, 孝睦2洞, 道坪洞, 不老鳳舞洞, 枝底洞, 東村洞, 公山洞
東 區 第3選舉區	芳村洞, 解顏洞, 安心1洞, 安心2洞, 安心3·4洞
西 區 第1選舉區	內唐1洞, 內唐2·3洞, 坪里2洞, 飛山2·3洞, 飛山4洞, 院垞洞
西 區 第2選舉區	內唐4洞, 坪里4洞, 坪里5洞, 坪里6洞, 上中梨洞
西 區 第3選舉區	坪里1洞, 坪里3洞, 飛山1洞, 飛山5洞, 飛山6洞, 飛山7洞
南 區 第1選舉區	梨泉洞, 鳳德1洞, 鳳德2洞, 鳳德3洞, 大明2·8洞, 大明5洞
南 區 第2選舉區	大明1洞, 大明3洞, 大明4洞, 大明6洞, 大明9洞, 大明10洞, 大明11洞
北 區 第1選舉區	古城洞, 七星洞, 砧山1洞, 砧山2洞, 砧山3洞, 魯院1·2洞, 魯院3洞
北 區 第2選舉區	山格1洞, 山格2洞, 山格3洞, 山格4洞, 大賢1洞, 大賢2洞
北 區 第3選舉區	伏賢1洞, 伏賢2洞, 檢丹洞, 無怠助也洞, 漆谷1洞
北 區 第4選舉區	漆谷2洞, 漆谷3洞, 觀音洞, 太田洞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壽 城 區 第1選舉區	泛魚1洞, 泛魚2洞, 泛魚3洞, 泛魚4洞, 晚村1洞, 黃金1洞, 黃金2洞
壽 城 區 第2選舉區	晚村2洞, 晚村3洞, 孤山1洞, 孤山2洞, 孤山3洞
壽 城 區 第3選舉區	壽城1街洞, 壽城2·3街洞, 壽城4街洞, 中洞, 上洞, 斗山洞
壽 城 區 第4選舉區	巴洞, 池山1洞, 池山2洞, 凡勿1洞, 凡勿2洞
達 西 區 第1選舉區	聖堂1洞, 聖堂2洞, 頭流1洞, 頭流2洞, 頭流3洞, 本里洞, 甘三洞
達 西 區 第2選舉區	竹田洞, 長基洞, 梨谷洞, 新塘洞
達 西 區 第3選舉區	月城1洞, 月城2洞, 松峴1洞, 松峴2洞, 本洞
達 西 區 第4選舉區	辰泉洞, 上仁1洞, 上仁2洞, 上仁3洞, 桃源洞
達 城 郡 第1選舉區	花園邑, 多斯邑, 嘉昌面, 河濱面
達 城 郡 第2選舉區	論工邑, 玉浦面, 玄風面, 瑜伽面, 求智面
仁川廣域市議會議員	
中 區 第1選舉區	沿岸洞, 新興洞, 桃源洞, 栗木洞
中 區 第2選舉區	新浦洞, 東仁川洞, 北城洞, 松月洞, 永宗洞, 龍游洞
東 區 第1選舉區	萬石洞, 花水1·花平洞, 花水2洞, 松峴1·2洞, 松峴3洞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東 區 第2選舉區	松林1洞, 松林2洞, 松林3·5洞, 松林4洞, 松林6洞, 金昌洞
南 區 第1選舉區	道禾1洞, 道禾2洞, 道禾3洞, 朱安1洞, 朱安5洞, 朱安6洞
南 區 第2選舉區	朱安2洞, 朱安3洞, 朱安4洞, 朱安7洞, 朱安8洞
南 區 第3選舉區	崇義1洞, 崇義2洞, 崇義3洞, 崇義4洞, 龍現1洞, 龍現2洞, 龍現3洞, 龍現4洞
南 區 第4選舉區	龍現5洞, 鶴翼1洞, 鶴翼2洞, 官校洞, 文鶴洞
延 壽 區 第1選舉區	玉連洞, 東春1洞, 東春2洞, 清涼洞
延 壽 區 第2選舉區	仙鶴洞, 延壽1洞, 延壽2洞, 延壽3洞, 青鶴洞
南 洞 區 第1選舉區	九月1洞, 九月3洞, 九月4洞, 南村·桃林洞, 論峴·古棧洞
南 洞 區 第2選舉區	九月2洞, 間石1洞, 間石2洞, 間石4洞
南 洞 區 第3選舉區	間石3洞, 萬壽2洞, 萬壽3洞, 萬壽5洞
南 洞 區 第4選舉區	萬壽1洞, 萬壽4洞, 萬壽6洞, 長壽·西昌洞
富 平 區 第1選舉區	富平4洞, 富平5洞, 富開1洞, 富開2洞, 富開3洞, 日新洞
富 平 區 第2選舉區	富平1洞, 富平2洞, 富平3洞, 富平6洞, 十井1洞, 十井2洞
富 平 區 第3選舉區	清川1洞, 清川2洞, 葛山1洞, 葛山2洞, 三山洞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富 平 區 第4選舉區	山谷1洞, 山谷2洞, 山谷3洞, 山谷4洞
桂 陽 區 第1選舉區	曉星1洞, 曉星2洞, 鵲田1洞, 鵲田2洞, 鵲田・瑞雲洞
桂 陽 區 第2選舉區	桂山1洞, 桂山2洞, 桂山3洞, 桂陽1洞, 桂陽2洞
西 區 第1選舉區	黔岩・景西洞, 連喜洞, 佳亭1洞, 佳亭2洞, 佳亭3洞, 黔丹1洞, 黔丹2洞
西 區 第2選舉區	新峴・元倉洞, 石南1洞, 石南2洞, 石南3洞, 佳佐1洞, 佳佐2洞, 佳佐3洞, 佳佐4洞
江 華 郡 第1選舉區	江華邑, 河帖面, 兩寺面, 松海面, 喬桐面
江 華 郡 第2選舉區	仙源面, 佛恩面, 吉祥面, 華道面, 良道面, 內可面, 三山面, 西島面
甕 津 郡 第1選舉區	北島面, 德積面, 紫月面, 靈興面
甕 津 郡 第2選舉區	延坪面, 白翎面, 大青面
光州廣域市議會議員	
東 區 第1選舉區	忠壯洞, 東明洞, 鷄林1洞, 鷄林2洞, 山水1洞, 山水2洞
東 區 第2選舉區	芝山1洞, 芝山2洞, 瑞南洞, 鶴1洞, 鶴2洞, 鶴雲洞, 池元洞
西 區 第1選舉區	良洞, 良3洞, 光川洞, 柳德洞, 尙武1洞, 尙武2洞
西 區 第2選舉區	農城1洞, 農城2洞, 花亭1洞, 花亭2洞, 花亭3洞, 花亭4洞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西 區 第3選舉區	西倉洞, 金湖楓岩洞
南 區 第1選舉區	楊林洞, 芳林1洞, 芳林2洞, 鳳仙1洞, 鳳仙2洞, 社稷洞
南 區 第2選舉區	月山洞, 月山4洞, 月山5洞, 白雲1洞, 白雲2洞, 珠月2洞
南 區 第3選舉區	珠月1洞, 孝德洞, 松岩洞, 大村洞
北 區 第1選舉區	中興1洞, 中興2洞, 中興3洞, 中央洞, 新安洞, 牛山洞, 文興1洞, 文興2洞
北 區 第2選舉區	豐鄉洞, 文化洞, 斗岩1洞, 斗岩2洞, 斗岩3洞, 石谷洞
北 區 第3選舉區	林洞, 龍鳳洞, 梧峙1洞, 梧峙2洞
北 區 第4選舉區	雲岩1洞, 雲岩2洞, 雲岩3洞, 東林洞
北 區 第5選舉區	瑞山洞, 梅谷洞, 建國洞
光 山 區 第1選舉區	松汀1洞, 松汀2洞, 道山洞, 魚龍洞, 平洞, 本良洞, 三道洞
光 山 區 第2選舉區	飛鴉洞, 新佳洞, 河南洞, 林谷洞
光 山 區 第3選舉區	月谷1洞, 月谷2洞, 牛山洞, 新興洞, 東谷洞
大田廣域市議會議員	
東 區 第1選舉區	中央洞, 仁洞, 孝洞, 大新洞, 蘇堤洞, 弘道洞, 三省1洞, 三省2洞, 山內洞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東 區 第2選舉區	新興洞, 大洞, 紫陽洞, 板岩1洞, 板岩2洞, 龍雲洞, 大清洞
東 區 第3選舉區	佳陽1洞, 佳陽2洞, 龍田洞, 城南1洞, 城南2洞
中 區 第1選舉區	銀杏宣化洞, 大興洞, 文昌洞, 石橋洞, 大寺洞, 芙沙洞
中 區 第2選舉區	牧洞, 中村洞, 龍頭洞, 五柳洞, 太平1洞, 太平2洞
中 區 第3選舉區	柳川1洞, 柳川2洞, 文化1洞, 文化2洞, 山城洞
西 區 第1選舉區	福守洞, 桃馬2洞, 正林洞, 佳水院洞, 杞城洞
西 區 第2選舉區	桃馬1洞, 邊洞, 槐亭洞, 佳狀洞, 內洞
西 區 第3選舉區	龍汶洞, 炭坊洞, 葛馬1洞, 葛馬2洞
西 區 第4選舉區	屯山1洞, 屯山2洞, 三川洞
西 區 第5選舉區	月坪1洞, 月坪2洞, 月坪3洞, 萬年洞
儒 城 區 第1選舉區	鎮岑洞, 溫泉1洞, 溫泉2洞
儒 城 區 第2選舉區	新城洞, 田民洞, 九則洞
大 德 區 第1選舉區	梧井洞, 大禾洞, 法1洞, 法2洞
大 德 區 第2選舉區	懷德2洞, 中里洞
大 德 區 第3選舉區	懷德1洞, 新灘津洞, 石峰洞, 德岩洞, 木上洞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蔚山廣域市議會議員	
中 區 第1選舉區	鶴城洞, 福山1洞, 福山2洞, 北亭洞, 玉橋洞, 城南洞
中 區 第2選舉區	伴鷗1洞, 伴鷗2洞, 兵營1洞, 兵營2洞, 藥泗洞
中 區 第3選舉區	牛亭洞, 太和洞, 茶雲洞
南 區 第1選舉區	新亭1洞, 新亭2洞, 新亭3洞, 新亭4洞, 新亭5洞
南 區 第2選舉區	無去1洞, 無去2洞, 玉洞
南 區 第3選舉區	達洞, 三山洞, 也音3洞
南 區 第4選舉區	也音1長生浦洞, 也音2洞, 仙岩洞
東 區 第1選舉區	方魚洞, 華亭洞, 大松洞
東 區 第2選舉區	日山洞, 田下1洞, 田下2洞, 田下3洞
東 區 第3選舉區	南牧1洞, 南牧2洞, 南牧3洞
北 區 第1選舉區	農所1洞, 松亭洞, 江東洞
北 區 第2選舉區	農所2洞, 農所3洞
北 區 第3選舉區	孝門洞, 楊亭洞, 鹽浦洞
蔚 州 郡 第1選舉區	溫山邑, 溫陽邑, 西生面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蔚 州 郡 第2選舉區	凡西邑, 青良面, 熊村面
蔚 州 郡 第3選舉區	彥陽邑, 斗東面, 斗西面, 上北面, 三南面, 三同面
京畿道議會議員	
水 原 市 第1選舉區	新安洞, 華西1洞, 華西2洞, 迎華洞, 棗園洞, 鍊武洞
水 原 市 第2選舉區	芭長洞, 栗泉洞, 亭子1洞, 亭子2洞, 松竹洞
水 原 市 第3選舉區	梅校洞, 細柳1洞, 細柳2洞, 細柳3洞, 勸善洞, 谷善洞
水 原 市 第4選舉區	坪洞, 西屯洞, 九雲洞, 梅山洞, 高等洞, 笠北洞
水 原 市 第5選舉區	八達洞, 南香洞, 池洞, 牛滿1洞, 牛滿2洞, 仁溪洞, 遠川洞, 二儀洞
水 原 市 第6選舉區	梅灘1洞, 梅灘2洞, 梅灘3洞, 梅灘4洞, 靈通1洞, 靈通2洞
城 南 市 第1選舉區	新興1洞, 新興2洞, 新興3洞, 壽進1洞, 壽進2洞, 丹垆洞
城 南 市 第2選舉區	太平1洞, 太平2洞, 太平3洞, 太平4洞, 山城洞, 陽地洞, 福井洞, 新村洞, 高登洞, 始興洞
城 南 市 第3選舉區	城南洞, 上大院1洞, 上大院2洞, 上大院3洞, 下大院洞
城 南 市 第4選舉區	中洞, 金光1洞, 金光2洞, 銀杏1洞, 銀杏2洞
城 南 市 第5選舉區	二梅1洞, 二梅2洞, 野塔1洞, 野塔2洞, 野塔3洞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城南市 第6選舉區	藪內1洞, 藪內2洞, 書峴1洞, 書峴2洞, 板橋洞, 雲中洞
城南市 第7選舉區	亭子1洞, 亭子2洞, 金谷洞
城南市 第8選舉區	盆唐洞, 藪內3洞, 亭子3洞, 九美洞
高陽市 第1選舉區	舟橋洞, 元新洞, 興道洞, 星沙1洞, 星沙2洞, 高陽洞, 官山洞
高陽市 第2選舉區	花井1洞, 花井2洞
高陽市 第3選舉區	孝子洞, 神道洞, 昌陵洞, 幸信1洞, 花田洞, 大德洞
高陽市 第4選舉區	陵谷洞, 幸州洞, 幸信2洞
高陽市 第5選舉區	食寺洞, 楓山洞, 白石洞, 馬頭1洞, 馬頭2洞
高陽市 第6選舉區	注葉1洞, 注葉2洞, 獐項1洞, 獐項2洞
高陽市 第7選舉區	一山1洞, 一山2洞, 高烽洞
高陽市 第8選舉區	一山3洞, 一山4洞, 大化洞, 松浦洞, 松山洞
富川市 第1選舉區	遠美1洞, 驛谷1洞, 驛谷2洞, 春衣洞, 陶唐洞
富川市 第2選舉區	深谷1洞, 深谷2洞, 深谷3洞, 遠美2洞, 素砂洞
富川市 第3選舉區	若大洞, 中1洞, 中2洞, 中3洞, 中4洞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富 川 市 第4選舉區	中洞, 上洞, 上1洞
富 川 市 第5選舉區	深谷本1洞, 深谷本洞, 松內1洞, 松內2洞
富 川 市 第6選舉區	素砂本1洞, 素砂本2洞, 素砂本3洞, 範朴洞, 槐安洞, 驛谷3洞
富 川 市 第7選舉區	城谷洞, 古康本洞, 古康1洞
富 川 市 第8選舉區	遠宗1洞, 遠宗2洞, 梧亭洞, 新興洞
安 養 市 第1選舉區	安養1洞, 安養3洞, 安養4洞, 安養5洞, 安養6洞, 安養7洞, 安養8洞, 安養9洞
安 養 市 第2選舉區	安養2洞, 石水1洞, 石水2洞, 石水3洞, 博達1洞, 博達2洞
安 養 市 第3選舉區	飛山1洞, 飛山2洞, 飛山3洞, 復興洞, 達安洞, 富林洞
安 養 市 第4選舉區	冠陽1洞, 冠陽2洞, 坪村洞, 坪安洞, 貴仁洞
安 養 市 第5選舉區	虎溪1洞, 虎溪2洞, 虎溪3洞, 범계洞, 新村洞, 葛山洞
安 山 市 第1選舉區	四1洞, 四2洞, 本五1洞, 本五2洞, 本五3洞, 半月洞
安 山 市 第2選舉區	一洞, 釜谷洞, 月陂洞, 聲浦洞, 安山洞
安 山 市 第3選舉區	元谷本洞, 元谷1洞, 元谷2洞, 仙府1洞, 仙府2洞, 仙府3洞
安 山 市 第4選舉區	瓦洞, 古棧1洞, 古棧2洞, 草芝洞, 大阜洞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龍 仁 市 第1選舉區	中央洞, 驛三洞, 柳林洞, 東部洞, 南四面, 二東面
龍 仁 市 第2選舉區	蒲谷面, 慕賢面, 遠三面, 白岩面, 陽智面
龍 仁 市 第3選舉區	器興邑, 駒城邑
龍 仁 市 第4選舉區	豐德川1洞, 豐德川2洞, 竹田1洞, 竹田2洞, 東川洞, 上峴洞
議 政 府 市 第1選舉區	議政府1洞, 議政府2洞, 議政府3洞, 虎院洞, 佳陵1洞, 佳陵2洞, 佳陵3洞, 綠楊洞
議 政 府 市 第2選舉區	長岩洞, 新谷1洞, 新谷2洞, 松山洞, 自金洞
南 楊 州 市 第1選舉區	瓦阜邑, 和道邑, 水洞面, 烏安面, 好坪洞, 坪內洞, 金谷洞, 養正洞
南 楊 州 市 第2選舉區	榛接邑, 眞乾邑, 梧南邑, 別內面, 退溪院面, 芝錦洞, 陶農洞
平 澤 市 第1選舉區	振威面, 西炭面, 芝山洞, 松北洞, 新場1洞, 新場2洞
平 澤 市 第2選舉區	通伏洞, 細橋洞, 中央洞, 西井洞, 松炭洞
平 澤 市 第3選舉區	彭城邑, 古德面, 梧城面, 青北面, 浦升面, 玄德面, 安仲面
平 澤 市 第4選舉區	新平洞, 原平洞, 碑前1洞, 碑前2洞
光 明 市 第1選舉區	光明2洞, 光明3洞, 光明4洞, 光明5洞, 光明6洞, 光明7洞, 鶴溫洞
光 明 市 第2選舉區	光明1洞, 鐵山1洞, 鐵山2洞, 鐵山3洞, 鐵山4洞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光 明 市 第3選舉區	下安1洞, 下安2洞, 下安3洞, 下安4洞, 所下1洞, 所下2洞
始 興 市 第1選舉區	大也洞, 新川洞, 新峴洞, 銀杏洞, 梅花洞, 果林洞
始 興 市 第2選舉區	牧甘洞, 君子洞, 正往1洞, 正往2洞, 蓮城洞
軍 浦 市 第1選舉區	軍浦1洞, 軍浦2洞, 山本1洞, 衿井洞, 大夜洞
軍 浦 市 第2選舉區	山本2洞, 齋宮洞, 五禁洞, 修理洞, 宮內洞, 光亭洞
華 城 市 第1選舉區	台安邑, 峰潭邑, 梅松面, 飛鳳面, 麻道面, 松山面, 西新面, 南陽洞
華 城 市 第2選舉區	八灘面, 長安面, 雨汀面, 鄉南面, 楊甘面, 正南面, 東灘面
坡 州 市 第1選舉區	金村1洞, 金村2洞, 月籠面, 炭縣面, 交河面, 條里面
坡 州 市 第2選舉區	汶山邑, 坡州邑, 法院邑, 廣灘面, 坡平面, 積城面, 郡內面, 津東面
利 川 市 第1選舉區	新屯面, 栢沙面, 戶法面, 麻長面, 倉前洞, 中里洞, 官庫洞
利 川 市 第2選舉區	長湖院邑, 夫鉢邑, 大月面, 暮加面, 雪星面, 栗面
九 里 市 第1選舉區	葛梅洞, 東九洞, 仁倉洞, 橋門1洞
九 里 市 第2選舉區	橋門2洞, 水澤1洞, 水澤2洞, 水澤3洞
金 浦 市 第1選舉區	金浦1洞, 金浦2洞, 金浦3洞, 高村面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金 浦 市 第2選舉區	陽村面, 通津面, 大串面, 月串面, 霞城面
抱 川 郡 第1選舉區	抱川邑, 郡內面, 新北面, 蒼水面, 永中面, 永北面, 官仁面
抱 川 郡 第2選舉區	蘇屹邑, 內村面, 加山面, 一東面, 二東面, 花峴面
廣 州 市 第1選舉區	退村面, 南終面, 中部面, 京安洞, 松亭洞, 廣南洞
廣 州 市 第2選舉區	五浦邑, 草月面, 實村面, 都尺面
安 城 市 第1選舉區	孔道邑, 安城3洞, 薇陽面, 大德面, 陽城面, 元谷面, 古三面
安 城 市 第2選舉區	安城1洞, 安城2洞, 寶蓋面, 金光面, 瑞雲面, 一竹面, 竹山面, 三竹面
河 南 市 第1選舉區	泉峴洞, 新長1洞, 新長2洞, 甘北洞, 春宮洞
河 南 市 第2選舉區	德豐1洞, 德豐2洞, 德豐3洞, 豐山洞, 草二洞
儀 旺 市 第1選舉區	古川洞, 富谷洞, 五全洞
儀 旺 市 第2選舉區	內蓀1洞, 內蓀2洞, 清溪洞
楊 州 郡 第1選舉區	檜泉邑, 隱縣面, 南面
楊 州 郡 第2選舉區	楊州邑, 白石邑, 廣積面, 長興面
烏 山 市 第1選舉區	中央洞, 新場洞, 洗馬洞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烏 山 市 第2選舉區	大園洞, 南村洞, 楚坪洞
驪 州 郡 第1選舉區	驪州邑, 北內面, 康川面
驪 州 郡 第2選舉區	占東面, 加南面, 陵西面, 興川面, 金沙面, 山北面, 大神面
楊 平 郡 第1選舉區	楊平邑, 江上面, 江下面, 楊西面, 玉泉面, 西宗面
楊 平 郡 第2選舉區	丹月面, 青雲面, 楊東面, 砥堤面, 龍門面, 介軍面
東豆川市 第1選舉區	生淵2洞, 佛峴洞, 上牌洞
東豆川市 第2選舉區	生淵1洞, 中央洞, 保山洞, 逍遙洞
果 川 市 第1選舉區	中央洞, 別陽洞, 果川洞
果 川 市 第2選舉區	葛峴洞, 富林洞, 文原洞
加 平 郡 第1選舉區	加平邑, 北面
加 平 郡 第2選舉區	雪岳面, 外西面, 上面, 下面
漣 川 郡 第1選舉區	漣川邑, 郡南面, 帽山面, 旺澄面, 新西面, 中面
漣 川 郡 第2選舉區	全谷邑, 青山面, 百鶴面, 長南面
江原道議會議員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春 川 市 第1選舉區	東面, 東內面, 東山面, 北山面, 後坪2洞, 後坪3洞, 碩士洞
春 川 市 第2選舉區	新北邑, 西面, 史北面, 新司牛洞, 昭陽洞, 朝雲洞, 校洞, 槿花洞, 藥司明洞, 後坪1洞
春 川 市 第3選舉區	新東面, 南面, 南山面, 退溪洞, 江南洞, 孝子1洞, 孝子2洞, 孝子3洞
原 州 市 第1選舉區	文幕邑, 好楮面, 所草面, 地正面, 富論面, 貴來面, 興業面, 板富面, 神林面, 茂實洞, 鳳山洞, 杏邱洞, 盤谷觀雪洞
原 州 市 第2選舉區	一山洞, 鶴城洞, 丹溪洞, 牛山洞, 台庄1洞, 台庄2洞, 中央洞
原 州 市 第3選舉區	園仁洞, 開運洞, 明倫1洞, 明倫2洞, 丹邱洞
江 陵 市 第1選舉區	邱井面, 江東面, 玉溪面, 江南洞, 城德洞, 松亭洞
江 陵 市 第2選舉區	城山面, 旺山面, 洪濟洞, 中央洞, 玉泉洞, 浦南1洞, 浦南2洞, 內谷洞
江 陵 市 第3選舉區	注文津邑, 連谷面, 沙川面, 鏡浦洞, 草堂洞, 校1洞, 校2洞
東 海 市 第1選舉區	泉谷洞, 松亭洞, 北三洞, 北坪洞, 三和洞
東 海 市 第2選舉區	釜谷洞, 東湖洞, 發翰洞, 墨湖洞, 望祥洞
太 白 市 第1選舉區	黃池洞, 黃蓮洞, 三水洞, 上長洞
太 白 市 第2選舉區	文曲所道洞, 長省洞, 求門沼洞, 鐵岩洞
東 草 市 第1選舉區	永郎洞, 東明洞, 琴湖洞, 校洞, 青湖洞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東 草 市 第2選舉區	蘆鶴洞, 朝陽洞, 大浦洞
三 陟 市 第1選舉區	道溪邑, 下長面, 未老面, 新基面, 南陽洞, 城內洞
三 陟 市 第2選舉區	遠德邑, 近德面, 蘆谷面, 柯谷面, 校洞, 汀羅洞
洪 川 郡 第1選舉區	洪川邑, 北方面
洪 川 郡 第2選舉區	化村面, 斗村面, 乃村面, 瑞石面, 東面, 南面, 西面, 內面
橫 城 郡 第1選舉區	橫城邑, 公根面, 書院面
橫 城 郡 第2選舉區	隅川面, 安興面, 屯內面, 甲川面, 晴日面, 講林面
寧 越 郡 第1選舉區	寧越邑, 上東邑, 中東面, 下東面
寧 越 郡 第2選舉區	北面, 南面, 西面, 酒泉面, 水周面
平 昌 郡 第1選舉區	平昌邑, 美灘面, 芳林面, 大和面
平 昌 郡 第2選舉區	蓬坪面, 龍坪面, 珍富面, 道岩面
旌 善 郡 第1選舉區	旌善邑, 東面, 北面, 北坪面, 臨溪面
旌 善 郡 第2選舉區	古汗邑, 舍北邑, 新東邑, 南面
鐵 原 郡 第1選舉區	鐵原邑, 東松邑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鐵 原 郡 第2選舉區	金化邑, 葛末邑, 西面, 近南面, 近北面
華 川 郡 第1選舉區	華川邑, 看東面
華 川 郡 第2選舉區	下南面, 上西面, 史內面
楊 口 郡 第1選舉區	楊口邑
楊 口 郡 第2選舉區	南面, 東面, 方山面, 亥安面
麟 蹄 郡 第1選舉區	麟蹄邑, 北面, 瑞和面
麟 蹄 郡 第2選舉區	南面, 麒麟面, 上南面
高 城 郡 第1選舉區	杆城邑, 竹旺面, 土城面
高 城 郡 第2選舉區	巨津邑, 縣內面
襄 陽 郡 第1選舉區	襄陽邑, 西面, 降峴面
襄 陽 郡 第2選舉區	巽陽面, 縣北面, 縣南面
忠清北道議會議員	
清 州 市 第1選舉區	中央洞, 牛岩洞, 內德第1洞, 內德第2洞, 栗陽·斜川洞, 梧根場洞
清 州 市 第2選舉區	성안洞, 塔·大成洞, 永雲洞, 金川洞, 龍潭·明岩·山城洞, 龍岩·龍亭·方西洞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清 州 市 第3選舉區	社稷第1洞，社稷第2洞，司倉洞，慕忠洞，山·米·粉·長洞，秀谷1洞，秀谷2洞，聖化·開新·竹林洞
清 州 市 第4選舉區	雲泉·新鳳洞，福臺第1洞，福臺第2洞，佳景洞，鳳鳴第1洞，鳳鳴第2·松亭洞，江西第1洞，江西第2洞
忠 州 市 第1選舉區	周德邑，迺味面，上茺面，利柳面，薪尼面，老隱面，仰城面，可金面，城內·忠仁洞，芝峴洞，文化洞，虎岩·直洞，達川洞，鳳方洞，漆琴·金陵洞
忠 州 市 第2選舉區	金加面，東良面，山尺面，嚴政面，蘇台面，校峴·安林洞，校峴2洞，龍山洞，連守洞，牧杏·龍灘洞
堤 川 市 第1選舉區	鳳陽邑，白雲面，松鶴面，明西洞，義林洞，龍頭洞，青田洞，榮川洞
堤 川 市 第2選舉區	錦城面，清風面，水山面，德山面，寒水面，校洞，中央洞，東峴洞，花山洞
清 原 郡 第1選舉區	琅城面，米院面，加德面，南一面，南二面，文義面，賢都面，芙蓉面
清 原 郡 第2選舉區	內秀邑，江內面，江外面，玉山面，梧倉面，北二面
報 恩 郡 第1選舉區	報恩邑，內俗離面，外俗離面，馬老面，炭釜面
報 恩 郡 第2選舉區	三升面，水汗面，懷南面，懷北面，內北面，山外面
沃 川 郡 第1選舉區	沃川邑，郡西面，郡北面
沃 川 郡 第2選舉區	東二面，安南面，安內面，青城面，青山面，伊院面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永 同 郡 第1選舉區	永同邑, 楊江面, 龍化面, 鶴山面, 陽山面
永 同 郡 第2選舉區	龍山面, 黃澗面, 秋風嶺面, 梅谷面, 上村面, 深川面
鎮 川 郡 第1選舉區	鎮川邑, 文白面, 栢谷面
鎮 川 郡 第2選舉區	德山面, 草坪面, 梨月面, 廣惠院面
槐 山 郡 第1選舉區	槐山邑, 甘勿面, 長延面, 延豐面, 七星面, 文光面, 青川面, 清安面, 沙梨面, 沼壽面, 佛頂面
槐 山 郡 第2選舉區	曾坪邑, 道安面
陰 城 郡 第1選舉區	陰城邑, 蘇伊面, 遠南面, 孟洞面
陰 城 郡 第2選舉區	金旺邑, 大所面, 三成面, 笙極面, 甘谷面
丹 陽 郡 第1選舉區	丹陽邑, 丹城面, 大崗面, 赤城面
丹 陽 郡 第2選舉區	梅浦邑, 佳谷面, 永春面, 魚上川面
忠清南道議會議員	
天 安 市 第1選舉區	豐歲面, 廣德面, 木川邑, 北面, 城南面, 修身面, 竝川面, 東面, 院城1洞, 院城2洞, 青龍洞
天 安 市 第2選舉區	中央洞, 文城洞, 鳳鳴洞, 新龍洞, 新安洞
天 安 市 第3選舉區	成歡邑, 聖居邑, 稷山邑, 笠場面, 富城洞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天 安 市 第4選舉區	星井1洞, 星井2洞, 雙龍1洞, 雙龍2洞
公 州 市 第1選舉區	利仁面, 灘川面, 鷄龍面, 反浦面, 中學洞, 山城洞, 熊津洞, 金鶴洞, 玉龍洞
公 州 市 第2選舉區	維鳩邑, 長岐面, 儀堂面, 正安面, 牛城面, 寺谷面, 新豊面, 新官洞
保 寧 市 第1選舉區	周浦面, 舟橋面, 鰲川面, 川北面, 青所面, 青蘿面, 大川1洞, 大川2洞
保 寧 市 第2選舉區	熊川邑, 藍浦面, 珠山面, 帽山面, 聖住面, 大川3洞, 大川4洞, 大川5洞
牙 山 市 第1選舉區	鹽峙邑, 湯井面, 陰峰面, 屯浦面, 靈仁面, 仁州面, 溫陽溫泉1洞, 溫陽溫泉2洞, 權谷洞
牙 山 市 第2選舉區	松岳面, 排芳面, 仙掌面, 道高面, 新昌面, 神井洞, 龍禾洞, 溫州洞
瑞 山 市 第1選舉區	大山邑, 仁旨面, 浮石面, 八峰面, 地谷面, 聖淵面, 富春洞, 石南洞
瑞 山 市 第2選舉區	音岩面, 雲山面, 海美面, 高北面, 東門洞, 活城洞, 壽石洞
論 山 市 第1選舉區	江景邑, 城東面, 光石面, 魯城面, 上月面, 夫赤面, 彩雲面, 鷲岩洞, 富倉洞
論 山 市 第2選舉區	鍊武邑, 連山面, 豆磨面, 伐谷面, 陽村面, 可也谷面, 恩津面
錦 山 郡 第1選舉區	錦山邑, 富利面, 南一面, 南二面
錦 山 郡 第2選舉區	錦城面, 濟原面, 郡北面, 珍山面, 福壽面, 秋富面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燕 岐 郡 第1選舉區	鳥致院邑, 東面, 全東面
燕 岐 郡 第2選舉區	西面, 南面, 錦南面, 全義面, 小井面
扶 餘 郡 第1選舉區	扶餘邑, 窺岩面, 恩山面, 石城面, 草村面
扶 餘 郡 第2選舉區	外山面, 內山面, 九龍面, 鴻山面, 玉山面, 南面, 忠化面, 良化面, 林川面, 場岩面, 世道面
舒 川 郡 第1選舉區	長項邑, 馬西面, 華陽面, 麒山面, 韓山面, 馬山面
舒 川 郡 第2選舉區	舒川邑, 時草面, 文山面, 板橋面, 鍾川面, 庇仁面, 西面
青 陽 郡 第1選舉區	青陽邑, 雲谷面, 大峙面, 化城面, 飛鳳面
青 陽 郡 第2選舉區	定山面, 木面, 青南面, 長坪面, 南陽面
洪 城 郡 第1選舉區	洪城邑, 洪北面, 金馬面, 葛山面, 龜項面
洪 城 郡 第2選舉區	廣川邑, 洪東面, 長谷面, 銀河面, 結城面, 西部面
禮 山 郡 第1選舉區	禮山邑, 大述面, 新陽面, 光時面
禮 山 郡 第2選舉區	插橋邑, 大興面, 鷹峰面, 德山面, 鳳山面, 古德面, 新岩面, 吾可面
泰 安 郡 第1選舉區	泰安邑, 所遠面, 遠北面, 梨園面
泰 安 郡 第2選舉區	安眠邑, 古南面, 南面, 近興面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唐 津 郡 第1選舉區	唐津邑, 高大面, 石門面, 大湖芝面, 貞美面, 松山面
唐 津 郡 第2選舉區	合德邑, 沔川面, 順城面, 牛江面, 新平面, 松嶽面
全羅北道議會議員	
全 州 市 第1選舉區	中央洞, 豐南洞, 校洞, 太平洞, 中老松1洞, 中老松2洞, 南老松洞, 東完山洞, 西完山洞, 東棲鶴洞, 西棲鶴洞, 中華山1洞, 中華山2洞, 平和1洞, 平和2洞
全 州 市 第2選舉區	西新洞, 三川1洞, 三川2洞, 三川3洞, 孝子1洞, 孝子2洞, 孝子3洞, 孝子4洞
全 州 市 第3選舉區	西老松洞, 鎮北1洞, 鎮北2洞, 麟後1洞, 麟後2洞, 麟後3洞, 牛牙1洞, 牛牙2洞, 湖城洞
全 州 市 第4選舉區	德津洞, 金岩1洞, 金岩2洞, 八福洞, 松川1洞, 松川2洞, 助村洞, 東山洞
群 山 市 第1選舉區	臨陂面, 瑞穗面, 大野面, 開井面, 聖山面, 羅浦面, 中央洞, 中米洞, 興南洞, 助村洞, 京岩洞, 龜岩洞, 開井洞
群 山 市 第2選舉區	沃溝邑, 玉山面, 澮縣面, 沃島面, 沃西面, 秀松洞, 羅雲2洞
群 山 市 第3選舉區	海新洞, 月明洞, 五龍洞, 新豐洞, 三鶴洞, 先陽洞, 羅雲1洞, 少龍洞, 米星洞
益 山 市 第1選舉區	咸悅邑, 黃登面, 咸羅面, 熊浦面, 聖堂面, 龍安面, 龍東面, 南中洞, 慕縣洞, 新洞
益 山 市 第2選舉區	朗山面, 望城面, 礪山面, 三箕面, 永登洞, 三星洞
益 山 市 第3選舉區	五山面, 金馬面, 王宮面, 春浦面, 中央洞, 平和洞, 仁和洞, 銅山洞, 馬洞, 松鶴洞, 八峰洞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井 邑 市 第1選舉區	新泰仁邑, 北面, 笠岩面, 所聲面, 古阜面, 永元面, 德川面, 梨坪面, 淨雨面, 甘谷面, 蓮池洞, 農所洞, 上橋洞
井 邑 市 第2選舉區	泰仁面, 瓮東面, 七寶面, 山內面, 山外面, 水城洞, 長明洞, 內藏上洞, 市基洞, 市基3洞
南 原 市 第1選舉區	雲峰邑, 朱川面, 山東面, 二白面, 引月面, 阿英面, 山內面, 東忠洞, 鄉校洞, 道通洞
南 原 市 第2選舉區	水旨面, 松洞面, 周生面, 金池面, 帶江面, 大山面, 巳梅面, 德果面, 寶節面, 竹巷洞, 鷺岩洞, 錦洞, 王亭洞
金 堤 市 第1選舉區	龍池面, 白鷗面, 金溝面, 鳳南面, 鳳山面, 金山面, 新豐洞, 劍山洞
金 堤 市 第2選舉區	萬頃邑, 竹山面, 白山面, 扶梁面, 孔德面, 青蝦面, 聖德面, 進鳳面, 廣活面, 堯村洞, 校洞月村洞
完 州 郡 第1選舉區	參禮邑, 上關面, 伊西面, 所陽面, 九耳面
完 州 郡 第2選舉區	鳳東邑, 龍進面, 高山面, 飛鳳面, 雲洲面, 華山面, 東上面, 庚川面
鎮 安 郡 第1選舉區	鎮安邑, 白雲面, 聖壽面, 馬靈面
鎮 安 郡 第2選舉區	龍潭面, 顏川面, 銅鄉面, 上田面, 富貴面, 程川面, 朱川面
茂 朱 郡 第1選舉區	茂朱邑, 赤裳面, 富南面
茂 朱 郡 第2選舉區	茂豐面, 雪川面, 安城面
長 水 郡 第1選舉區	長水邑, 山西面, 蟠岩面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長 水 郡 第2選舉區	長溪面, 天川面, 溪南面, 溪北面
任 實 郡 第1選舉區	任實邑, 雲岩面, 新平面, 聖壽面, 新德面, 館村面
任 實 郡 第2選舉區	青雄面, 檜樹面, 三溪面, 江津面, 德峙面, 只沙面
淳 昌 郡 第1選舉區	淳昌邑, 仁溪面, 東溪面, 赤城面, 柳等面
淳 昌 郡 第2選舉區	豐山面, 金果面, 八德面, 福興面, 雙置面, 龜林面
高 敞 郡 第1選舉區	高敞邑, 雅山面, 心元面, 興德面, 星內面, 新林面, 富安面
高 敞 郡 第2選舉區	古水面, 茂長面, 孔音面, 上下面, 海里面, 星松面, 大山面
扶 安 郡 第1選舉區	扶安邑, 舟山面, 東津面, 幸安面, 白山面
扶 安 郡 第2選舉區	界火面, 保安面, 邊山面, 鎮西面, 上西面, 下西面, 茁浦面, 蝟島面
全羅南道議會議員	
木 浦 市 第1選舉區	山亭3洞, 連山洞, 元山洞, 大成洞, 南陽洞, 北橋洞, 務安洞, 東明洞, 三鶴洞, 萬戶洞, 儒達洞, 忠武洞, 竹橋洞, 北港洞
木 浦 市 第2選舉區	龍塘1洞, 龍塘2洞, 山亭1洞, 山亭2洞, 龍海洞, 二老洞, 上洞, 下塘洞, 新興洞, 三鄉洞, 玉岩洞, 復興洞
麗 水 市 第1選舉區	突山邑, 南面, 三山面, 東門洞, 中央洞, 忠武洞, 大橋洞, 菊洞, 月湖 洞, 西崗洞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麗 水 市 第2選舉區	光林洞, 麗西洞, 文水洞, 美坪洞, 屯德洞, 萬德洞, 珠三洞, 三日洞, 貓島洞, 閑麗洞
麗 水 市 第3選舉區	召羅面, 栗村面, 華陽面, 華井面, 雙鳳洞, 柿田洞, 麗川洞
順 天 市 第1選舉區	松光面, 外西面, 樂安面, 別良面, 上沙面, 鄉洞, 稠谷洞, 南蹄洞, 中央洞, 道沙洞
順 天 市 第2選舉區	海龍面, 德蓮洞, 豐德洞, 楮田洞, 長泉洞
順 天 市 第3選舉區	昇州邑, 住岩面, 西面, 黃田面, 月燈面, 梅谷洞, 三山洞, 旺照洞
羅 州 市 第1選舉區	南平邑, 多侍面, 文平面, 老安面, 金川面, 山浦面, 松月洞, 錦南洞, 城北洞
羅 州 市 第2選舉區	細枝面, 旺谷面, 潘南面, 公山面, 洞江面, 茶道面, 鳳凰面, 榮江洞, 榮山洞, 二倉洞
光 陽 市 第1選舉區	光陽邑, 鳳岡面, 玉龍面, 玉谷面, 津上面, 津月面, 多鴨面
光 陽 市 第2選舉區	骨若洞, 中馬洞, 廣英洞, 太仁洞, 金湖洞
潭 陽 郡 第1選舉區	潭陽邑, 武貞面, 金城面, 龍面, 月山面
潭 陽 郡 第2選舉區	鳳山面, 古西面, 南面, 昌平面, 大德面, 水北面, 大田面
谷 城 郡 第1選舉區	谷城邑, 梧谷面, 木寺洞面, 竹谷面, 古達面
谷 城 郡 第2選舉區	三岐面, 石谷面, 玉果面, 立面, 兼面, 梧山面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求 禮 郡 第1選舉區	求禮邑, 文尺面, 艮田面
求 禮 郡 第2選舉區	土旨面, 馬山面, 光義面, 龍方面, 山洞面
高 興 郡 第1選舉區	高興邑, 占岩面, 影南面, 過驛面, 南陽面, 東江面, 大西面, 豆原面
高 興 郡 第2選舉區	道陽邑, 豐陽面, 道德面, 錦山面, 道化面, 浦頭面, 蓬萊面, 東日面
寶 城 郡 第1選舉區	寶城邑, 蘆洞面, 彌力面, 得糧面, 會泉面, 熊峙面
寶 城 郡 第2選舉區	筏橋邑, 兼白面, 栗於面, 福內面, 文德面, 鳥城面
和 順 郡 第1選舉區	和順邑, 道谷面, 道岩面, 二西面, 北面
和 順 郡 第2選舉區	寒泉面, 春陽面, 清豐面, 梨陽面, 綾州面, 同福面, 南面, 東面
長 興 郡 第1選舉區	長興邑, 長東面, 長平面, 有治面, 夫山面
長 興 郡 第2選舉區	冠山邑, 大德邑, 蓉山面, 安良面, 會鎮面
康 津 郡 第1選舉區	康津邑, 道岩面, 薪田面, 城田面
康 津 郡 第2選舉區	郡東面, 七良面, 大口面, 馬良面, 鵲川面, 兵營面, 唵川面
海 南 郡 第1選舉區	海南邑, 馬山面, 黃山面, 山二面, 門內面, 花源面
海 南 郡 第2選舉區	三山面, 花山面, 縣山面, 松旨面, 北平面, 北日面, 玉泉面, 溪谷面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靈 巖 郡 第1選舉區	靈巖邑, 德津面, 金井面, 新北面, 始終面, 都浦面
靈 巖 郡 第2選舉區	郡西面, 西湖面, 鶴山面, 美岩面, 三湖面
務 安 郡 第1選舉區	務安邑, 玄慶面, 望雲面, 海際面, 雲南面
務 安 郡 第2選舉區	一老邑, 三鄉面, 夢灘面, 清溪面
咸 平 郡 第1選舉區	咸平邑, 孫佛面, 新光面, 嚴多面
咸 平 郡 第2選舉區	鶴橋面, 大洞面, 羅山面, 海保面, 月也面
靈 光 郡 第1選舉區	靈光邑, 大馬面, 畝良面, 佛甲面, 郡西面, 郡南面
靈 光 郡 第2選舉區	白岫邑, 弘農邑, 鹽山面, 法聖面, 落月面
長 城 郡 第1選舉區	長城邑, 西三面, 北一面, 北二面, 北下面
長 城 郡 第2選舉區	珍原面, 南面, 東化面, 森西面, 森溪面, 黃龍面
莞 島 郡 第1選舉區	莞島邑, 蘆花邑, 所安面, 甫吉面
莞 島 郡 第2選舉區	金日邑, 郡外面, 薪智面, 古今面, 藥山面, 青山面, 金塘面, 生日面
珍 島 郡 第1選舉區	珍島邑, 郡內面, 古郡面, 義新面
珍 島 郡 第2選舉區	臨淮面, 智山面, 鳥島面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新 安 郡 第1選舉區	智島邑, 曾島面, 荏子面, 慈恩面, 岩泰面, 押海面
新 安 郡 第2選舉區	飛禽面, 都草面, 黑山面, 荷衣面, 新衣面, 長山面, 安佐面, 八禽面
慶尙北道議會議員	
浦 項 市 第1選舉區	興海邑, 神光面, 清河面, 松羅面, 杞溪面, 竹長面, 杞北面, 牛昌洞, 長良洞, 環汝洞
浦 項 市 第2選舉區	中央洞, 鶴山洞, 良鶴洞, 竹島1洞, 竹島2洞, 龍興洞, 斗湖洞
浦 項 市 第3選舉區	上大1洞, 上大2洞, 海島1洞, 海島2洞, 松島洞, 孝谷洞, 大梨洞
浦 項 市 第4選舉區	九龍浦邑, 延日邑, 烏川邑, 大松面, 東海面, 長鬢面, 大甫面, 青林洞, 製鐵洞
慶 州 市 第1選舉區	甘浦邑, 外東邑, 陽北面, 陽南面, 城東洞, 皇吾洞, 月城洞, 東川洞, 佛國洞, 普德洞
慶 州 市 第2選舉區	乾川邑, 內南面, 山內面, 西面, 見谷面, 中部洞, 城乾洞, 塔正洞, 皇南洞, 仙桃洞
慶 州 市 第3選舉區	安康邑, 江東面, 川北面, 龍江洞, 隍城洞
金 泉 市 第1選舉區	牙浦邑, 農所面, 南面, 開寧面, 甘文面, 禦侮面, 甘川面, 助馬面, 龍岩洞, 大新洞, 智佐洞
金 泉 市 第2選舉區	鳳山面, 代項面, 龜城面, 知禮面, 釜項面, 大德面, 甌山面, 城南洞, 平和洞, 陽金洞, 大谷洞
安 東 市 第1選舉區	豐山邑, 豐川面, 一直面, 南後面, 太華洞, 玉洞, 松下洞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安 東 市 第2選舉區	南先面, 臨河面, 吉安面, 臨東面, 中區洞, 明倫洞, 龍上洞
安 東 市 第3選舉區	臥龍面, 北後面, 西後面, 禮安面, 陶山面, 祿轉面, 西區洞, 法上洞, 平和洞, 安奇洞
龜 尾 市 第1選舉區	善山邑, 高牙邑, 舞乙面, 玉城面, 桃開面, 海平面, 山東面, 長川面
龜 尾 市 第2選舉區	松亭洞, 元坪1洞, 元坪2洞, 芝山洞, 道良洞, 善州元南洞, 荊谷1洞, 荊谷2洞, 廣坪洞
龜 尾 市 第3選舉區	新坪1洞, 新坪2洞, 飛山洞, 工團1洞, 工團2洞, 上毛沙谷洞, 林吳洞, 仁同洞, 眞美洞, 陽浦洞
榮 州 市 第1選舉區	豐基邑, 順興面, 丹山面, 浮石面, 上望洞, 下望洞, 榮州1洞, 榮州2洞, 可興2洞
榮 州 市 第2選舉區	伊山面, 平恩面, 文殊面, 長壽面, 安定面, 鳳峴面, 休川1洞, 休川2洞, 休川3洞, 可興1洞
永 川 市 第1選舉區	琴湖邑, 清通面, 新寧面, 花山面, 北安面, 大昌面, 西部洞, 完山洞, 南部洞
永 川 市 第2選舉區	華北面, 華南面, 紫陽面, 臨臯面, 古鏡面, 東部洞, 中央洞
尙 州 市 第1選舉區	咸昌邑, 沙伐面, 中東面, 洛東面, 外西面, 銀尺面, 恭儉面, 利安面, 北門洞, 溪林洞, 東門洞
尙 州 市 第2選舉區	青里面, 功城面, 外南面, 內西面, 牟東面, 牟西面, 化東面, 化西面, 化北面, 化南面, 南院洞, 東城洞, 新興洞
聞 慶 市 第1選舉區	聞慶邑, 加恩邑, 麻城面, 籠岩面, 中央洞, 新坪洞, 茅田洞
聞 慶 市 第2選舉區	永順面, 山陽面, 虎溪面, 山北面, 東魯面, 店村洞, 新興洞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慶 山 市 第1選舉區	中央洞, 東部洞, 西部洞, 南部洞, 北部洞, 中方洞
慶 山 市 第2選舉區	河陽邑, 珍良邑, 瓦村面, 慈仁面, 龍城面, 南山面, 押梁面, 南川面
軍 威 郡 第1選舉區	軍威邑, 召保面, 孝令面
軍 威 郡 第2選舉區	缶溪面, 友保面, 義興面, 山城面, 古老面
義 城 郡 第1選舉區	義城邑, 丹村面, 點谷面, 玉山面, 舍谷面, 春山面, 佳音面, 金城面
義 城 郡 第2選舉區	鳳陽面, 比安面, 龜川面, 丹密面, 丹北面, 安溪面, 多仁面, 新平面, 安平面, 安寺面
青 松 郡 第1選舉區	青松邑, 巴川面, 眞寶面
青 松 郡 第2選舉區	府東面, 府南面, 縣東面, 縣西面, 安德面
英 陽 郡 第1選舉區	英陽邑, 日月面, 首比面
英 陽 郡 第2選舉區	立岩面, 青杞面, 石保面
盈 德 郡 第1選舉區	盈德邑, 江口面, 南亭面, 達山面
盈 德 郡 第2選舉區	知品面, 丑山面, 寧海面, 柄谷面, 蒼水面
清 道 郡 第1選舉區	清道邑, 雲門面, 錦川面, 梅田面
清 道 郡 第2選舉區	華陽邑, 角南面, 豐角面, 角北面, 伊西面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高 靈 郡 第1選舉區	高靈邑, 德谷面, 雲水面, 雙林面
高 靈 郡 第2選舉區	星山面, 茶山面, 開津面, 牛谷面
星 州 郡 第1選舉區	星州邑, 船南面, 龍岩面, 月恒面
星 州 郡 第2選舉區	修倫面, 伽泉面, 金水面, 大家面, 碧珍面, 草田面
漆 谷 郡 第1選舉區	倭館邑, 枝川面, 東明面, 架山面
漆 谷 郡 第2選舉區	石積面, 北三面, 若木面, 岐山面
醴 泉 郡 第1選舉區	醴泉邑, 龍門面, 上里面, 下里面, 甘泉面, 普門面
醴 泉 郡 第2選舉區	虎鳴面, 柳川面, 龍宮面, 開浦面, 知保面, 豐壤面
奉 化 郡 第1選舉區	奉化邑, 物野面, 鳳城面, 才山面, 明湖面, 祥雲面
奉 化 郡 第2選舉區	法田面, 春陽面, 小川面, 石浦面
蔚 珍 郡 第1選舉區	蔚珍邑, 北面, 西面, 近南面, 竹邊面
蔚 珍 郡 第2選舉區	平海邑, 遠南面, 箕城面, 濫井面, 厚浦面
鬱 陵 郡 第1選舉區	鬱陵邑
鬱 陵 郡 第2選舉區	西面, 北面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慶尙南道議會議員	
昌 原 市 第1選舉區	東邑, 北面, 大山面, 義昌洞, 八龍洞
昌 原 市 第2選舉區	明谷洞, 鳳林洞, 龍池洞
昌 原 市 第3選舉區	盤松洞, 中央洞, 上南洞, 熊南洞
昌 原 市 第4選舉區	沙巴洞, 加音丁洞, 聖住洞
馬 山 市 第1選舉區	龜山面, 鎮東面, 鎮北面, 鎮田面, 縣洞, 架浦洞, 月影洞, 文化洞, 半月洞, 中央洞
馬 山 市 第2選舉區	玩月洞, 茲山洞, 東西洞, 城湖洞, 校坊洞, 鷺山洞, 午東洞, 合浦洞, 山湖洞
馬 山 市 第3選舉區	內西邑, 檜原1洞, 檜原2洞, 石田1洞, 石田2洞, 檜城洞
馬 山 市 第4選舉區	陽德1洞, 陽德2洞, 合城1洞, 合城2洞, 龜岩1洞, 龜岩2洞, 鳳岩洞
晉 州 市 第1選舉區	晉城面, 一班城面, 二班城面, 寺奉面, 智水面, 琴山面, 上大1洞, 上大2洞, 下大1洞, 下大2洞, 上坪洞, 草長洞
晉 州 市 第2選舉區	文山邑, 奈洞面, 井村面, 金谷面, 望京洞, 江南洞, 七岩洞, 城址洞, 中央洞, 鳳安洞, 蓬水洞, 玉峰洞, 加虎洞
晉 州 市 第3選舉區	大谷面, 集賢面, 美川面, 鳴石面, 大坪面, 水谷面, 上鳳東洞, 上鳳西洞, 平居洞, 新安洞, 二峴洞, 板門洞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鎮 海 市 第1選舉區	中央洞, 太平洞, 忠武洞, 余佐洞, 太白洞, 慶和洞, 屏岩洞
鎮 海 市 第2選舉區	石洞, 泥洞, 自隱洞, 德山洞, 豐湖洞, 熊川洞, 熊東1洞, 熊東2洞
統 營 市 第1選舉區	山陽邑, 龍南面, 道山面, 光道面, 欲知面, 閑山面, 蛇梁面, 美修1洞, 美修2洞, 鳳坪洞, 道南洞
統 營 市 第2選舉區	道泉洞, 明井洞, 中央洞, 貞梁洞, 北新洞, 霧田洞, 仁平洞
泗 川 市 第1選舉區	泗川邑, 正東面, 泗南面, 龍見面, 柵洞面, 昆陽面, 昆明面, 西浦面
泗 川 市 第2選舉區	東西洞, 仙龜洞, 東西錦洞, 閔龍洞, 香村洞, 南陽洞
金 海 市 第1選舉區	進永邑, 長有面, 酒村面, 進禮面, 翰林面, 會峴洞, 內外洞, 七山西部洞
金 海 市 第2選舉區	生林面, 上東面, 大東面, 東上洞, 府院洞, 北部洞, 活川洞, 三安洞, 佛岩洞
密 陽 市 第1選舉區	府北面, 上東面, 山外面, 山內面, 丹場面, 內一洞, 內二洞, 校洞, 三門洞
密 陽 市 第2選舉區	三浪津邑, 下南邑, 上南面, 初同面, 武安面, 清道面, 駕谷洞
巨 濟 市 第1選舉區	新縣邑, 一運面, 東部面, 南部面, 巨濟面, 屯德面, 沙等面
巨 濟 市 第2選舉區	延草面, 河清面, 長木面, 長承浦洞, 麻田洞, 菱浦洞, 鵝洲洞, 玉浦1洞, 玉浦2洞
梁 山 市 第1選舉區	熊上邑, 東面, 上北面, 下北面
梁 山 市 第2選舉區	勿禁邑, 院洞面, 中央洞, 三城洞, 江西洞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宜 寧 郡 第1選舉區	宜寧邑, 嘉禮面, 七谷面, 大義面, 華井面, 龍德面
宜 寧 郡 第2選舉區	正谷面, 芝正面, 洛西面, 富林面, 鳳樹面, 宮柳面, 柳谷面
咸 安 郡 第1選舉區	伽倻邑, 咸安面, 郡北面, 法守面, 餘航面
咸 安 郡 第2選舉區	代山面, 漆西面, 漆北面, 漆原面, 山仁面
昌 寧 郡 第1選舉區	昌寧邑, 高岩面, 城山面, 大合面, 梨房面, 遊漁面, 大池面
昌 寧 郡 第2選舉區	南旨邑, 桂城面, 靈山面, 丈麻面, 都泉面, 吉谷面, 釜谷面
固 城 郡 第1選舉區	固城邑, 三山面, 下一面, 下二面, 上里面
固 城 郡 第2選舉區	大可面, 永縣面, 永吾面, 介川面, 九萬面, 會華面, 馬岩面, 東海面, 巨流面
南 海 郡 第1選舉區	南海邑, 西面, 古縣面, 雪川面
南 海 郡 第2選舉區	二東面, 尙州面, 三東面, 彌助面, 南面, 昌善面
河 東 郡 第1選舉區	河東邑, 花開面, 岳陽面, 赤良面, 橫川面, 古田面
河 東 郡 第2選舉區	金南面, 金城面, 辰橋面, 良甫面, 北川面, 青岩面, 玉宗面
山 清 郡 第1選舉區	山清邑, 車黃面, 梧釜面, 生草面, 今西面
山 清 郡 第2選舉區	三壯面, 矢川面, 丹城面, 新安面, 生比良面, 新等面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咸 陽 郡 第1選舉區	咸陽邑, 馬川面, 休川面, 柳林面, 栢田面, 瓶谷面
咸 陽 郡 第2選舉區	水東面, 池谷面, 安義面, 西下面, 西上面
居 昌 郡 第1選舉區	居昌邑, 北上面, 渭川面, 馬利面
居 昌 郡 第2選舉區	主尙面, 熊陽面, 高梯面, 南上面, 南下面, 神院面, 加祚面, 加北面
陝 川 郡 第1選舉區	陝川邑, 鳳山面, 妙山面, 伽倻面, 冶爐面, 大并面, 龍洲面
陝 川 郡 第2選舉區	栗谷面, 草溪面, 雙冊面, 德谷面, 青德面, 赤中面, 大陽面, 雙栢面, 三嘉面, 佳會面
濟州道議會議員	
濟 州 市 第1選舉區	一徒1洞, 一徒2洞
濟 州 市 第2選舉區	二徒1洞, 二徒2洞, 我羅洞
濟 州 市 第3選舉區	三徒1洞, 三徒2洞, 吾羅洞
濟 州 市 第4選舉區	龍潭1洞, 龍潭2洞, 外都洞, 梨湖洞, 道頭洞
濟 州 市 第5選舉區	健入洞, 禾北洞, 三陽洞, 奉蓋洞
濟 州 市 第6選舉區	蓮洞
濟 州 市 第7選舉區	老衡洞

選舉區名	選 舉 區 域
西歸浦市 第1選舉區	松山洞, 正房洞, 孝敦洞, 靈泉洞, 東烘洞
西歸浦市 第2選舉區	中央洞, 天地洞, 西烘洞, 大倫洞
西歸浦市 第3選舉區	大川洞, 中文洞, 猊來洞
北濟州郡 第1選舉區	翰林邑, 翰京面
北濟州郡 第2選舉區	涯月邑, 楸子面
北濟州郡 第3選舉區	舊左邑, 朝天邑, 牛島面
南濟州郡 第1選舉區	大靜邑, 安德面
南濟州郡 第2選舉區	南元邑
南濟州郡 第3選舉區	城山邑, 表善面

選舉日까지 放送 또는 定期刊行物
 에 公表된 人身攻撃, 政策의 歪曲
 宣傳 등으로 피해를 받은 候補者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
 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그
 放送 또는 記事掲載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日이내에 書面으로 당해
 放送을 한 放送社에 反論報道의 放
 送을, 당해 記事를 게재한 言論社
 에 反論報道文의 게재를 각각 請求
 할 수 있다. 다만, 그 放送 또는 記
 事掲載가 있는 날부터 30日이 경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放送社 또는 言論社는 第1項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候補
者나 그 代理人과 反論報道의 내
 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協議
 한 후, 放送에 있어서는 이를 請求
 받은 때부터 48時間이내에 無料로
 反論報道의 放送을 하여야 하며, 定
 期刊行物에 있어서는 編輯이 완료
 되지 아니한 같은 定期刊行物의 다
 음 발행호에 無料로 反論報道文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定期
 刊行物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選
 舉日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反論報道의 請求를 받은 때부터 48
 時間이내에 당해 定期刊行物이 배
 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定期刊行物

.....

 피해를 받은 政黨
(中央黨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候補者.....

②.....
 당해
政黨, 候補者 또는.....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團體는 그 名義 또는 그 代表의 名義로 公明選舉推進活動을 할 수 없다.

1.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民運動團體로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團體

2. ~ 4. (생략)

5. 醫療保險法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 및 醫療保險聯合會와 國民醫療保險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民醫療保險管理公團

<신설>

②·③ (생략)

第10條의2(選舉不正監視團) ①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를 실시하는 때마다 選舉不正을 監視하기 위하여 選舉期間開始日부터 選舉일까지 당해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選舉不正監視團을 둔다.

②~⑤ (생략)

.....
.....
.....
.....

1.
.....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2. ~ 4. (현행과 같음)

5. 國民健康保險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民健康保險公團

6. 제8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단체중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②·③ (현행과 같음)

第10條의2(選舉不正監視團) ①.....
.....
.....選舉期間開始日전 10일부터.....
.....

②~⑤ (현행과 같음)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舉區의劃定)

① (생략)

②自治區·市·郡議員選舉區는 邑·面·洞(人口 5千 미만의 洞이 인접한 邑·面·洞과 統合된 때에는 그 統合된 區域을 말한다)을 單位로 劃定하되, 選舉區의 名稱·區域과 選舉區別 議員定數는 市·道 條例로 定한다.

<후단 신설>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舉區의劃定)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
.....
.....

이 경우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이 증원되는 읍과 동에서 선출하는 議員數는 選舉區別 1인으로 하되,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을 통합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지 않는 읍·면·동에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하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는 경우에는 통합하기 전의 읍·면·동을 각각의 選舉區로 한다.

第 4 章 選舉期間과 選舉日

第33條(選舉期間) ①選舉別 選舉期間
은 다음 各號와 같다.

- 1. (생 략)
- 2. 國會議員選舉와 地方自治團體의
長選舉는 17日
- 3. 地方議會議員選舉는 14日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97
條(選舉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舉)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選舉의 選
舉期間 및 第198條(天災·地變등으
로 인한 再投票)第1項의 規定에 의
한 再投票의 기간은 다음 各號와
같다.

- 1. (생 략)
- 2. 國會議員選舉와 地方自治團體의
長選舉는 15日
- 3. 地方議會議員選舉는 12日

③ (생 략)

第 4 章 選舉期間과 選舉日

第33條(選舉期間) ①.....
.....

- 1. (현행과 같음)
- 2.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舉는.....

<삭 제>

②.....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 2.
議會議員 및 長의 選舉.....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⑤候補者登錄을 申請하는 者は 第4項第1號의 被選舉權에 관한 證明書類의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候補者登錄申請者の 住所地를 관할하는 警察官署의 長에게 犯罪經歷照會를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警察官署의 長은 刑의失效等에關한法律 第6條(搜查資料票의 照會 및 回報制限等)의 規定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照會하여 回報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⑧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候補者登錄申請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受理하여야 하되, 登錄申請書·政黨의 推薦書와 本人承諾書·選舉權者의 推薦狀·寄託金 및 第4項第2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갖추지 아니한 登錄申請은 이를 受理할 수 없다. 다만, 候補者의 被選舉權에 관한 證明書類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公職者倫理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財産을 公開한 候補者의 登錄對象財産 公開確認書類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受理하되, 당해 選舉

5.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삭 제〉

⑥·⑦ (현행과 같음)

⑧.....
.....
.....
.....
..... 제5호.....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등록신청은.....
.....
.....
.....
.....

區選舉管理委員會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機關 또는 團體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에 回報하여야 한다.

⑨ (생략)

⑩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候補者登錄마감후 지체없이 選舉區를 管轄하는 檢察廳의 長에게 候補者의 禁錮이상 前科記錄을 照會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檢察廳의 長은 지체없이 그 前科記錄을 回報하여야 한다.

⑪ (생략)

.....
.....
.....
.....
.....

⑨ (현행과 같음)

⑩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政黨은 選舉期間開始日전 90일부터 본인 또는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소속 黨員의 전과기록을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長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당해 경찰관서의 長은 刑의 失效等에關한法律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回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回報받은 전과기록은 候補者登錄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候補者에 대하여는 候補者登錄마감후 지체없이 당해 選舉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長에게 그 候補者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長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없이 回報하여야 한다.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생 략)

第52條(登錄無效) ①候補者登錄후에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候補者의 登錄은 無效로 한다.

1. (생 략)

2.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選舉區別로 選舉할 定數範圍를 넘어 추천한 것이 발견되거나 第48條(選舉權者의 候補者推薦)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推薦人數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第49條(候補者登錄 등)第4項第2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되거나 같은 條 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對象財産公開確認書類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者중 登錄對象財産이 公開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⑫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回報받은 서류를 選舉區民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選舉期間이 아닌 때에는 이를 누구에게든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⑬ (현행 第12項과 같음)

第52條(登錄無效) ①.....

1. (現行과 같음)

2. 定數範圍를 넘어 추천하거나, 같은 條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女性候補者를 추천하거나.....

3. 제5호.....

第 7 章 選舉運動

第60條(選舉運動을 할 수 없는 者)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選舉運動을 할 수 없다. 다만, 第4號 내지 第9號에 해당하는 者가 候補者의 配偶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6. (생 략)
- 7. 統·里·班의 長

- 8. (생 략)
- 9. 醫療保險法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 및 醫療保險聯合會와 國民醫療保險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民醫療保險管理公團의 常勤 任·職員

第 7 章 選舉運動

第60條(選舉運動을 할 수 없는 者)

①.....
.....
.....
.....
.....

- 1. ~ 6. (현행과 같음)
-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 8. (현행과 같음)
- 9. 國民健康保險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民健康保險公團의.....

第66條(小型印刷物) ①選舉運動에 사용하는 小型印刷物은 候補者(大統領選舉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작성하고 小型印刷物에는 候補者의 사진·姓名·記號·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표시한다)·經歷·政見 및 所屬政黨의 政綱·정책 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地域區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포함한다)을 게재하되, 그 종류는 다음 各號에 의한다.

1. (생략)
2. 地域區國會議員選舉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選舉
책자형 小型印刷物 1種

3. (생략)
②第1項의 “傳單型 小型印刷物”이라 함은 길이 38센티미터 너비 27센티미터이내 또는 길이 54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이내에서 1枚(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하는 小型印刷物을, “책자형 小型印刷物”이라 함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이내에서 大統領選舉에 있어서는 16面이내로, 地域區國

第66條(小型印刷物) ①.....
.....
..... 政黨推薦候補者와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
는.....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地域區國會議員選舉, 比例代表市·
道議員選舉.....
.....

3.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地域區

刷物은 候補者가 候補者登錄마감
 일후 3日까지 管轄區·市·郡選舉
 管理委員會에 제출하고 해당 選舉
 管理委員會가 이를 확인하여 제출
 마감일후 3日까지 각각 郵便으로
 발송하되, 第65條(選舉公報)第2項
 의 規定에 의한 選舉公報(不在者
 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舉人
 대하여는 不在者投票用紙를 포함
 한다)와 동봉하여 발송하며, 管轄
 區域안의 每世帶에 발송하는 책자
 형 小型印刷物은 候補者가 候補者
 登錄마감일후 6日까지 管轄區·
 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제출하고
 해당 選舉管理委員會가 이를 확인
 하여 管轄區域안의 每世帶에 제출
 마감일후 3日까지 郵便으로 발송
 한다. 이 경우 당해 選舉管理委員
 會는 第1項·第2項 및 第5項의 規
 定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⑦~⑨ (생략)

⑩ 小型印刷物의 數量公告·작성·
배부 및 費用補填 기타 필요한 사
 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

⑦~⑨ (현행과 같음)

⑩ 작성
및 배부.....

<신 설>

제67조(현수막) ①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비례대표시·도 의원선거를 제외한다)의 보궐선거 등에 있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게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 및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당해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하며,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과 선거의 종류, 선거구명외의 사항은 게재할 수 없다.

③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68條(標札·手旗등) ①削除

②候補者, 候補者의 配偶者와 直系尊·卑屬, 選舉事務長, 選舉連絡所長, 會計責任者, 選舉事務員, 演說員 및 對談·討論者는 選舉運動期間중 (演說員 및 對談·討論者는 당해 演說 또는 對談·討論을 하는 장소에 한한다) 候補者의 사진·姓名·記號 및 所屬政黨名(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표시한다) 기타 弘報에

第68條(어깨띠)

②.....
.....
.....
.....
.....
.....
.....
.....
.....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標識板·標
札·手旗·腕章·어깨띠·마스코트
기타 選舉運動에 사용하는 小品을
두르거나 달거나 지닐 수 있다. 이
경우 第64條(宣傳壁報)第8項의 規定
에 의한 보완첩부용 宣傳壁報를 標
識板에 첩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標識板·標
札·手旗·腕章·어깨띠 및 마스코
트 등의 規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 ①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
施設[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
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그의 부담으로
第71條(候補者등의 放送演說)의 規
定에 의한 候補者등의 放送演說외
에 選舉運動期間중 候補者(國會議
員選舉에 있어서는 地域區國會議員
候補者를, 市·道議員選舉에 있어
서는 地域區市·道議員候補者를 말
한다)를 選舉人에게 알리기 위하여
候補者の 演說을 放送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編輯하지 아니한 상
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選舉區(地
域區國會議員選舉와 地域區市·道
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地域區)單位

.....어깨띠를
두를 수 있다. 이 경우 候補者가 아
닌 자는 신분증명서를 패용하여야 하
며, 그 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제63
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③.....어깨띠의
.....
.....

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 ①.....
.....
.....
.....政黨 또는 候
補者(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地
域區國會議員候補者를 말한다)를 選
舉人에게 알리기 위하여 候補者(比
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이 당해 選舉의 候補者
중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演說.....
.....
.....

로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候補者가 그 演說을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④ (생략)

第75條(合同演說會) ①~⑥ (생략)

<신설>

⑦ (생략)

第81條(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團體는 候補者(比例代表國會議員選舉와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를 제외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와 對談者 또는 討論者(大統領選舉 및 市·道知事選舉의 경우에 한하며, 政黨 또는 候補者가 選舉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選舉事務所 또는 選舉連絡所마다 지명한 1人을 말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 1人 또는 數人을 초청하여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對談·討論會를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屋內에서 개최할 수 있다.

..... 모든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公平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政黨 또는 候補者가.....

②~④ (현행과 같음)

第75條(合同演說會) ①~⑥ (현행과 같음)

⑦合同演說會를 개최하는 選舉管理委員會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候補者의 연설을 수화로 통역하여야 한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第81條(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 ①..... 候補者(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라. 職業輔導教育 또는 有償으로 실시하는 敎養講座를 개최·後援하는 행위

마.·바. (생략)

5. (생략)

③ (생략)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의 選舉日전 180日부터 選舉日까지 勤務時間중에 公共機關이 主催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第87條(團體의 選舉運動禁止) 團體는 社團·財團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選舉期間중에 그 名義 또는 그 代表의 名義로 특정 政黨이나 候補者를 支持·反對하거나 支持·反對할 것을 勸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勞動組合및 勞動關係調整法 第2條(定義)의 規

라.
.....
.....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바.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選舉日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第87條(團體의 選舉運動禁止)
.....
.....
.....
.....
.....
.....

定에 의한 勞動組合과 第81條(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를 개최할 수 있는 團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93條(脫法方法에 의한 文書·圖畫의 배부·게시등 금지) ①누구든지 選舉日전 180日(補闕選舉등에 있어서는 그 選舉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舉日까지 選舉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政黨(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支持·추천하거나 反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政黨의 명칭 또는 候補者의 姓名을 나타내는 廣告, 人事狀, 壁報, 사진, 文書·圖畫, 印刷物이나 錄音·錄畫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단서 신설>

.....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단체가 아닌 단체는.....

第93條(脫法方法에 의한 文書·圖畫의 배부·게시등 금지) ①.....

... 다만, 選舉期間중 候補者의 姓名·사진·주소·전화번호·학력·경력·현직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候補者가 직접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해당하는 행위는 寄附行爲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다과·떡·김밥·음료(酒類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飲食物(溫泉場·觀光地 또는 遊興施設을 갖춘 場所등에서의 接待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가. (생략)

나. 國會議員·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職務상의 행위로서 개최하는 議政活動報告會등 集會에 참석한 者

다·라. (생략)

5. ~ 7. (생략)

③~⑤ (생략)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國會議員 및 地方議會議員의 직무상의 행위로서 개최하는 議政報告會.....

다·라. (현행과 같음)

5. ~ 7. (현행과 같음)

③~⑤ (현행과 같음)

<신 설>

7. (생 략)

②·③ (생 략)

9. 제10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
하여 選舉運動을 위하여 허용된
전화를 이용한 選舉運動費用

10. (현행 제7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第 10 章 投 票

第146條(選舉方法) ① (생 략)

②投票는 직접 또는 郵便으로 하되,
1人 1票로 한다. <후단 신설>

③ (생 략)

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①~⑧ (생 략)

⑨投票事務員은 一般職公務員(公安
職群의 公務員을 제외한다)·技能
職公務員 또는 敎職員중에서 投票
區選舉管理委員會가 위촉하되, 選舉
日전 3日까지 그 姓名을 公告하여
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第 10 章 投 票

第146條(選舉方法) ① (현행과 같음)

②.....
..... 이 경우 市·道
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地域區市·道
議員選舉 및 比例代表市·道議員選
舉마다 1인 1표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①~⑧ (현
행과 같음)

⑨.....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중에서.....
.....
.....
.....

1. 國家公務員法 제2조에 규정된 국
가공무원과 地方公務員法 第2條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일반직
공무원중 公安직군의 공무원과 특
정직 및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2. 各급학교의 敎직원

3. 銀行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
융기관의 직원

4.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등의 직원

⑩ (생략)

第148條(不在者投票所의 設置) ①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日 전 7日(地方議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6日)부터 3日間(이하 "不在者投票期間"이라 한다)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舉人이 投票할 投票所(이하 "不在者投票所"라 한다)를 당해 事務所 所在地에 設置·운영하되, 2이상의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같은 建物 또는 施設안에 있는 때에는 不在者投票所를 공동으로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⑤不在者投票所를 設置한 選舉管理委員會는 不在者投票事務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一般職公務員(技能職公務員을 포함하되, 公安職群의 公務員을 제외한다) 또는 教員중에서 不在者投票事務員을 둔다.

⑥·⑦ (생략)

第150條(投票用紙의 候補者의 掲載順位등) ①投票用紙에는 候補者의 記號·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 및 姓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無所屬候補者는 候補者의 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의 欄에 "無所屬"으로 표시하고, 自治區·市·郡

⑩ (현행과 같음)

第148條(不在者投票所의 設置) ①.....
7일.....

②~④ (현행과 같음)

⑤.....

 제147조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⑥·⑦ (현행과 같음)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의 掲載順位등) ①.....

 표시하고, 比例代表

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候補者의 記號와 姓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記號는 投票用紙에 게재할 候補者의 順位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所屬政黨名과 候補者의 姓名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姓名이 같은 候補者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候補者의 掲載順位를 정함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마감일 현재 國會에서 議席을 갖고 있는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 國會에서 議席을 갖고 있지 아니한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 無所屬候補者의 順으로 한다. 다만, 自治區·市·郡議員選舉에 있어서 候補者의 掲載順位는 추첨에 의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가 候補者의 掲載順位를 정함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마감일 현재 國會에 議席을 갖고 있는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사

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의 기호와 政黨名을 표시하며,.....

②.....게재할 政黨 또는 候補者의.....政黨名과.....

③.....순으로 하고, 政黨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마감일 현재 國會에서 議席을 가지고 있는 政黨, 國會에서 議席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政黨의 순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가 政黨 또는 候補者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마감일 현재 國會에 議席을 가지고 있는 政黨이나 그 政

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投票函의 3분의 2이상인 到着되면 開票를 開始할 수 있다.

② (생략)

第178條(開票의 진행) ①開票는 投票區別로 하며 하나의 投票區의 投票數 計算이 끝난 후 다음의 投票函을 開函하되, 동시에 計票하는 投票函은 4개이내로 한다.

②候補者別 得票數의 公表는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이 投票區別로 集計·작성된 開票狀況表에 의하여 投票區 單位로 하되, 출석한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委員 全員은 公表전에 得票數를 檢閲하고 開票狀況表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開票事務를 지연시키는 委員이 있는 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開票錄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③누구든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別 得票數의 公表전에는 이를 報道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④ (생략)

第179條(無效投票)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投票는 無效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第178條(開票의 진행) ①.....구분하여 投票數를 계산한다.

②候補者別 득표수(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政黨別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③..... 다만, 選舉管理委員會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현행과 같음)

第179條(無效投票) ①.....

候補者別 得票數를 計算·公表하고
選舉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比例代表國會議員의 議席配分과 관
련있는 國會議員選舉와 比例代表
市·道議員의 議席配分과 관련있는
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政黨別
得票數를 市·道選舉管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市·道選舉管理委員會가 第1項
또는 第2項 後段의 보고를 받은 때
에는 大統領選舉에 있어서는 候補
者別 得票數를, 比例代表國會議員의
議席配分과 관련있는 國會議員選舉
에 있어서는 政黨別 得票數를 計
算·公表하고, 集計錄을 작성하여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송부하고, 比
例代表市·道議員의 議席配分과 관
련있는 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政黨別 得票數를 計算·公表하고
選舉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

第186條(投票紙·開票錄 및 選舉錄등
의 보관) 區·市·郡選舉管理委員
會는 投票紙·投票函·投票錄·開
票錄·選舉錄(大統領選舉 및 市·道
知事選舉를 제외한다) 기타 選舉에
관한 모든 書類를, 市·道選舉管理

候補者(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政黨을 말한다)別.....

.....
.....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
.....

③.....
.....
.....
.....
.....
..... 송부하여야 한다.

④~⑥ (현행과 같음)

第186條(投票紙·開票錄 및 選舉錄등
의 보관)
.....
..... 選舉錄.....
.....
.....

委員會는 集計錄 및 選舉錄(市·道
 知事選舉와 比例代表市·道議員選
 舉에 한한다) 기타 選舉에 관한 모
 든 書類를,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錄(大統領選舉 또는 比例代表
 國會議員選舉에 한한다) 기타 選舉
 에 관한 모든 書類를 그 當選人의
 任期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
 만, 第219條(選舉訴請)·第222條(選
 舉訴訟) 및 第223條(當選訴訟)의 規
 定에 의한 選舉에 관한 爭訟이 제
 기되지 아니하거나 係屬되지 아니
 하게 된 때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
 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
 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選舉錄

第 12 章 當 選 人

第190條(地方議會議員當選人的 決定 ·

公告 · 통지) ① ~ ③ (생 략)

④比例代表市 · 道議員選舉에 있어

서는 市 · 道選舉管理委員會가 任期

滿了에 의한 地域區市 · 道議員選舉

에서 有效投票總數(第188條第4項 後

段의 規定을 準用하는 第3項의 規

定에 의하여 當選人이 없는 市 · 道

議員地域區의 有效投票數를 포함한

다)의 100分の 5 이상을 得票한 각

政黨(比例代表市 · 道議員候補者名

簿를 제출하지 아니한 政黨을 제외

한다. 이하 이 條에서 “議席割當政

黨”이라 한다)에 대하여 任期滿了

에 의한 地域區市 · 道議員選舉에서

얻은 得票比率에 比例代表市 · 道議

員定數를 곱하여 算出된 數의 整數

의 議席을 그 政黨에 먼저 배분하

고 殘餘議席은 端數가 큰 順으로

各 議席割當政黨에 1席씩 배분한다.

⑤第4項의 경우 하나의 政黨에 議

席定數의 3分の 2 이상의 議席이 배

분될 때에는 그 政黨에 3分の 2에

해당하는 數의 整數의 議席을 먼저

배분하고, 殘餘議席은 나머지 議席

第 12 章 當 選 人

第190條(地方議會議員當選人的 決定 ·

公告 · 통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比例代表市 · 道議員選舉에 있어

서는 市 · 道選舉管理委員會가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

한 각 政黨(이하 이 조에서 “議席

割當政黨”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

해 選舉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比例

代表市 · 道議員定數를 곱하여 산출

된 수의 整數의 議席을 그 政黨에

먼저 배분하고 殘餘議席은 端數가

큰 順으로 각 議席割當政黨에 1석

씩 배분하되, 같은 端數가 있는 때

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政黨에 배

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政黨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議席割當政黨

의 득표수를 모든 議席割當政黨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

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⑤

.....

.....

.....

.....

割當政黨간의 得票比率에 殘餘議席을 곱하여 算出된 數의 整數의 議席을 각 나머지 議席割當政黨에 배분한 다음 殘餘議席이 있는 때에는 그 端數가 큰 順位에 따라 각 나머지 議席割當政黨에 1席씩 배분한다. 다만, 議席定數의 3分の 2에 해당하는 數의 整數에 해당하는 議席을 배분받는 政黨외에 議席割當政黨이 없는 경우에는 議席割當政黨이 아닌 政黨간의 得票比率에 殘餘議席을 곱하여 算出된 數의 整數의 議席을 먼저 그 政黨에 배분하고 殘餘議席이 있을 경우 端數가 큰 順으로 각 政黨에 1席씩 배분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 端數가 있는 경우의 議席配分은 제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管轄市·道選舉管理委員會는 제출된 政黨別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名簿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政黨에 배분된 比例代表市·道議員議席의 當選人을 결정한다.

⑦政黨에 배분된 比例代表市·道議員議席數가 그 政黨이 추천한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數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議席은 空席으로 한다.

<신 설>

⑧市·道選舉管理委員會는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再投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投票區의 選舉人數를 당해 시·도의 選舉人數로 나누는 수에 比例代表市·道議員議席定數를 곱하여 얻은 수의 整數(1미만의 端數는 1로 본다)를 比例代表市·道議員議席定數에서 뺀 다음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比例代表市·道議員議席을 배분하고 當選人을 결정한다. 다만, 比例代表市·道議員議席配分이 배제된 政黨중 再投票결과에 따라 議席割當政黨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政黨마다 比例代表市·道議員定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整數(1미만의 端數는 1로 본다)를 별도로 빼야한다.

⑥第189條(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2項·第4項 내지 第9項의 規定은 比例代表市·道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에 이를 準用한다.

第192條 (被選舉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등) ①~③ (생략)

⑨.....

 제8항 및 제9항.....

第192條 (被選舉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比例代表國會議員 또는 比例代表市·道議員이 所屬政黨의 合黨·解散 또는 除名외의 사유로 黨籍을 離脫·변경하거나 2이상의 黨籍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國會法 第136條(退職) 또는 地方自治法 第70條(議員의 退職)의 規定에 불구하고 退職된다.

〈단서 신설〉

第193條(當選人決定의 錯誤是正) ① (생략)

②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中央選舉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을 하는 때에는 地域區國會議員選舉와 市·道知事 選舉에 있어서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의, 地域區市·道議員選舉 및 自治區·市·郡의 議會議員과 長의 選舉에 있어서는 市·道選舉管理委員會의 審査를 받아야 한다.

第194條(當選人의 再決定과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再配分) ①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④.....
.....
.....
.....
.....
.....
.....
.....
.....
.....
.....

다만, 比例代表國會議員이 國會議長으로 당선되어 國會法 규정에 의하여 黨籍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93條(當選人決定의 錯誤是正) ① (현행과 같음)

②.....
.....
.....
地域區國會議員選舉,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 및
.....
.....
.....
.....

第194條(當選人의 再決定과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 및 比例代表市·道議員議席의 再配分) ①.....
.....

決定·公告·통지)·第190條(地方議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또는 第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의 規定에 의한 當選人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當選無效의 判決이나 決定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第18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에서 大統領當選人을 決定한 경우에는 國會)는 지체없이 當選人을 다시 決定하여야 한다.

②第189條(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의 規定에 의한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 및 그 當選人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當選無效의 判決이 있는 때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議席을 再分配하고 다시 當選人을 決定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比例代表國會議員選舉 또는 比例代表市·

..... 제190조제1항 내지 제3항.....

②제189조 및 제190조제4항 내지 제8항의 規定에 의한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 또는 比例代表市·道議員議席의 배분 및 그 當選人決定의 위법을 이유로 當選無效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제197조의 사유로 인한 再選舉를 실시한 때에는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

③ (현행과 같음)

④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比例代表國會議員選舉 또는 比例代表市·

道議員選舉에 있어서 第195條(再選舉)第1號 및 第2號 前段(第188條第4項 後段의 경우를 제외한다)·第196條(選舉의 延期) 또는 第198條(天災·地變등으로 인한 再投票)의 사유로 인한 選舉를 실시한 때에는 第189條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剩餘議席을 각 政黨의 地域區國會議員選舉 또는 任期滿了에 의한 地域區市·道議員選舉에서의 得票數와 再選舉등에서의 得票數를 합하여 第189條第2項의 得票比率을 算出하고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定數 또는 比例代表市·道議員議席定數를 곱하여 얻은 數에서 각 政黨이 第189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배분받은 議席數를 剩餘가 큰 順位에 따라 배분하고 比例代表國會議員選舉 또는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의 當選人을 決定한다. 이 경우 第189條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道議員選舉에 있어서 제195조제1호 및 제2호 전단(제188조제4항 후단의 경우를 제외한다)·제196조 또는 제198조의 사유로 인한 選舉를 실시한 때에는 당초 選舉에서의 득표수와 再選舉등에서의 득표수를 합하여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그 득표비율에 議席定數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政黨이 이미 배분받은 議席數를 剩餘가 큰 순위에 따라 剩餘議席을 배분하고 當選人을 결정한다. 이 경우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제190조제4항 내지 제7항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 13 章 再選舉와 補闕選舉

第195條(再選舉)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再選舉(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地域區國會議員選舉를 말한다)를 실시한다.

1. 당해 選舉區(地域區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당해 國會議員地域區를, 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당해 市·道議員地域區를 말한다)의 候補者가 없는 때

2. ~ 6. (생략)

第197條(選舉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舉) ①·② (생략)

③第1項의 再選舉를 실시함에 있어서 政黨이 合黨한 경우 合黨된 政黨은 그 再選舉의 選舉期間開始日부터 그 다음 날까지 당해 選舉區 選舉管理委員會에 合黨전 候補者중 1人을 候補者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合黨된 政黨의 候補者의 記號는 당초 選舉당시의 그 候補者의 記號로 한다.

第 13 章 再選舉와 補闕選舉

第195條(再選舉)
.....
.....

1. 당해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

2. ~ 6. (현행과 같음)

第197條(選舉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추천하고, 比例代表 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合黨전 政黨이 제출한 候補者名簿중 하나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候補者(比例代表 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호는.....

③第1項의 再投票를 실시함에 있어서 合黨된 政黨이 추천한 候補者가 있는 경우 第194條(當選人의 再決定과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再配分)의 比例代表國會議員 및 比例代表市·道議員의 議席 再配分을 위한 得票數의 計算은 그 候補者의 合黨前 政黨의 得票數에 合算한다.

④·⑤ (생략)

③.....
.....候補者(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候補者名簿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제194조.....
.....

④·⑤ (현행과 같음)

第 14 章 同時選舉에 관한 特例

第205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

舉事務關係者の 選任에 관한 特例)

①同時選舉에 있어서 같은 政黨의 추천을 받은 2人이상의 候補者는 選舉事務所와 選舉連絡所를 공동으로 設置할 수 있다.

②~⑤ (생략)

第207條(책자형 小型印刷物에 관한

特例) ①同時選舉에 있어서 같은

政黨의 추천을 받은 2人이상의 候補者는 第66條(小型印刷物)의 規定에 의한 책자형 小型印刷物의 規格範圍안에서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책자형 小型印刷物을 공동으로 작성한 때에는 候補者마다 각각 1種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③ (생략)

第211條(投票用紙·投票案内文등에

관한 特例) ① (생략)

②任期滿了에 의한 選舉와 동시에 실시하는 自治區·市·郡議員選舉에 있어서 投票用紙에 掲載할 記號는 第150條(投票用紙의 候補者の 掲載順位등)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

第 14 章 同時選舉에 관한 特例

第205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

舉事務關係者の 選任에 관한 特例)

①..... 候補者(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 是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⑤ (현행과 같음)

第207條(책자형 小型印刷物에 관한

特例) ①.....

..... 候補者(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 是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②·③ (현행과 같음)

第211條(投票用紙·投票案内文등에

관한 特例) ① (현행과 같음)

②..... 政黨·候補者の 掲載順位등.....

長이 私印을 각각捺印하여 함께
 選舉人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選舉
 人은 먼저 교부받은 2개 選舉의 投
 票用紙에 각각 1인의 候補者를 선
 택하는 標를 한 후 각각 選舉別로
 設置된 投票函에 투입한 후 나머지
 2개 選舉의 投票用紙를 교부받아
 각각 1인의 候補者를 선택하는 標
 를 한 후 각각 選舉別로 설치된 投
 票函에 투입한 다음 投票所에서 퇴
 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選舉
 의 投票函에 잘못 투입된 投票紙는
 당해 選舉의 投票函에 투입된 것으
 로 본다.

<신 설>

④削除

⑤第1項 및 第2項외에 4개 選舉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의 投票와 開票
 의 節次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
 한다.

.....

 地方議會議員選舉의 投票用紙에 각
 각 1인의 候補者(比例代表市·道議
 員選舉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선
 택하는 標를 한 후 각각 選舉別(比
 例代表市·道議員選舉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설치된 投
 票函에 투입한 후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

③임기만료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舉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自治區·市·郡議員
 選舉의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
 178조제1항·제2항 및 제2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읍·면·동을 단
 위로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외에 4개 이상
 選舉.....
방법과 제3항의 개표절차..

 ..

第 17 章 罰 則

第255條(不正選舉運動罪)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3. (생략)

4. 第75條(合同演說會)第7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政黨·候補者등에 의한 演說會를 개최 한 者

5. ~ 19. (생략)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第91條(擴聲裝置와 自動車등의 사용제한)第1項·第3項 또는 第216條(4개 選舉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選舉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 또는 第91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하게 한 者

5. ~ 8. (생략)

③ (생략)

第256條(各種制限規定違反罪) ① (생략)

第 17 章 罰 則

第255條(不正選舉運動罪)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8항.....

5. ~ 19.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4개 이상.....

5.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第256條(各種制限規定違反罪)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選舉運動과 관련하여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

<신 설>

나. ~ 하. (생 략)

2. (생 략)

3. 다음 各目的 1에 해당하는 通告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가. 第8條의2(選舉放送審議委員會) 第5項 및 第6項[第8條의3(選舉記事審議委員會)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制裁措置등

나.·다. (생 략)

③~⑤ (생 략)

第261條(過怠料의 賦課·徵收등) ①·

② (생 략)

③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行위를 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생 략)

2. 다음 各目的 1에 해당하는 者

가.·나. (생 략)

②.....
.....
.....

1.
.....

가. 제67조의 規定에 위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자

나. ~ 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

가.
.....
..... 제6항
.....

나.·다. (현행과 같음)

③~⑤ (현행과 같음)

第261條(過怠料의 賦課·徵收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가.·나. (현행과 같음)

다. 第68條(標札・手旗등)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標識板・標札・手旗등을 選舉運動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하게 한 者

라.·마. (생략)

3.·4. (생략)

<신설>

<신설>

④~⑦ (생략)

다. 제68조.....어깨띠를.....

라.·마.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5. 제8조의3제4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正당한 사유없이 定期刊行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272조의2제4항의 規定에 의한 출석요구에 正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④~⑦ (현행과 같음)

第272條의2(選舉犯罪의 調査등) ①~

④ (생략)

<신설>

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절차·방법, 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第272條의2(選舉犯罪의 調査등) ①~

④ (현행과 같음)

⑤各級選舉管理委員會委員·職員은 選舉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제6항.....
.....
.....
.....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자를 제외한다)이 선거기간(선거부정감시단원의 경우 선거부정감시단을 두는 시기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代案)에 대한修正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2. 2. 28.

발 의 자 : 현경대 · 박세환 · 김영춘

김진재 · 윤한도 · 김용균

신영균 · 이성현 · 김광원

박시균 · 이상희 · 박희태

최돈웅 · 이상배 · 김형오

유성근 · 윤영탁 · 서정화

최병렬 · 고진부 · 장정언

김태홍 · 문희상 · 이인제

김경재 · 이주영 · 김원웅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227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대안)은 시·도의회 의원정수와 관련하여 현행 제22조제3항이 “의원정수가 14인 미만인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4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광역시는 16인, 도는 15인”으로 하였음.

그러나 이 개정안은 첫째, 그 동안 지방의회를 운영해본 결과 현행법상 17인의 의원정수로는 상임위원회의 구성이 어렵고, 광역의회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2인을 증원하여 19인으로 하려는 개정 취지에 비추어, 광역시는 2인을 증원하고 도는 1인만 증원하도록 하는 것은 법 개정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둘째, 현행법체계안에서 광역시와 도는 동등한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법적·제도적으로 차별되어서는 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이를 달리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이유로 광역시와 도의 의원정수를 동수인 “16인”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별표2]의 선거구를 조정하고자 이 수정안을 제안함.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代案)에 대한修正案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代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2조제3항중 “16人 미만이 되는 경우 그 定數를 광역시는 16人, 도는 15人으로 한다.”를 “16인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定數를 16인으로 한다.”로 한다.

안 [별표2] 제주시 제6선거구 선거구역난중 “蓮洞, 老衡洞”을 “蓮洞”으로 하고, 제주시 제7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濟州市 第7選舉區	老衡洞
-----------	-----

<p>③第1項 및 第2項의 기준에 의하여 算定된 議員定數가 14人미만이 되는 廣域市 및 道는 그 定數를 14人으로 한다.</p> <p>④ (생략)</p>	<p>당해 市·道議會議員의 定數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한 數에 1人을 더한 數로 한다.</p> <p>③..... 16인 미만이 되는 경우 그 定數를 廣域시는 16인, 도는 15인으로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③..... 16인 미만이 되는 廣域시 및 도는 그 定數를 16인으로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	---	---